#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202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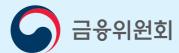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용 안내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본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며,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내용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마이데이터산업



1.1. 목적	
1.2.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2
1.3. 구성	3
1.4. 용어의 정의	3

# 圆 제2장 마이데이터 산업

2.1. 마이데이터산업	
2.2.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 방안	12
가. 원칙	12
나.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시 유의 사항	12
다. 알고하는 동의 원칙	15
2.3.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16
가. 이해상충 방지 내부관리규정 마련(법 제22조의9②)	16
나. 스크린 스크레이핑 금지(법 제22조의9③)	17
다. 정기전송 비용 부담(법 제22조의9⑥)	18
라. 전송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영 제18조의6⑩)	19
마. 전송 기록 정보주체 통지(영 제18조의6⑩)	19
바. 손해배상책임 이행 책임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법 제43조의3)	19
사. 금지행위	19

# CONTENTS

22

	가. 정보제공자의 API 정보전송 의무(법 제22조의9④)	22
	나.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전송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영 제18조의6⑩)	23
	3.1.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26
	가.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26
의	나. 전송요구와 제공동의의 차이	26
	3.2. 주요 당사자	27
	가. 정보제공자	27
	나. 정보수신자	28
	다. 중계기관	30
	라. 거점중계기관	31
	3.3. 대상 정보	32
	가. 여수신정보	40
	나. 보험정보	48
	다. 카드정보	54
	라. 금융투자정보	61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	64
	바. 전자결제정보	67
	사. 개인형IRP 정보	70
	아. 통신업 정보	72
	자. 보증보험 정보	74
	차. 공공정보	76

2.4.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4)

제3장

	3.4.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77
	3.5. 정보전송 방법 및 절차	79
	가. 마이데이터전송절차	79
	나. 일반전송절차	79
제4장	4.1.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84
마이데이터	4.2.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85
지원센터	가. 참여기관 관리	85
	나. 정보항목 선정 및 표준화	86
	다. 괴금체계 운영방안 관리	86
	라. 민원·분쟁사항 관리	87
	마. 정기협의체 운영	88
	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90
<b>B</b>		
제5장	5.1. 마이데이터산업 Q&A	94
<u></u>	가. 정보수집·저장	94
Q&A	나. 마이데이터서비스	97
	다. 업무범위	101
	라.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104
	마. 중계기관	106

#### CONTENTS

168

5.2. 전송요구권 Q&A	108
가. 개인신용정보 전송	108
나. 전송요구 운영 플랫폼	111
다. 전송정보 항목관련	113
5.3. 기타 Q&A	119

제6장

부록

나. Q&A

부록 1. 코드표	124
가. 계좌번호별 유형 및 상태 구분 코드	124
나. 상환방식 코드	125
다. 보험관련 코드	126
라. 금융투자업 정보 관련 코드	128
마.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유형 코드	130
바. 전자결제정보 거래유형 코드	132
사. 카드정보 코드	133
부록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송 표준전송요구서 및 표준동의서	135
가. 전송요구 방식 별 표준전송요구서 및 표준동의서	135

# 개정 이력

버전	개정일자	내 용	작성자
1.0	2021.2.23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한국신용정보원
1.1.	2021.7.29	- (2,3,111p)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표준 API 규격」추가 - (5p) 인증기관, 마이데이터종합포털용어 정의수정 - (12-14p)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시 유의 사항추가・수정(과도한 가입 마케팅금지,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현황 안내, 특화 서비스 제공 항목표시) - (15p) 알고하는 동의 및 전송요구의 원칙수정및 박스안③ 삭제 - (17-18p) 스크린 스크레이핑 시행일정 삭제및추가일정 반영 - (26p) 각주 14세 이상을 미만으로 수정, 표삭제 - (28p) 공공기관 설명추가(괄호안) - (31,32p) 중계기관 설명추가(행정안전부관련문의는 신정원) - (38p) 정기전송 주기 수정 - (69p) 주문내역카테고리 13개 수정 - (77p) 표수정(표준 전송요구서 반영) - (78p) 보안・비밀계좌 정보 전송 수정 - (79p) PDS 전송절차 수정 - (81,82p) 중계기관 추가(정보통신진흥협회) - (85-91p) 마이데이터지원센터 전체수정 - (94-121p) Q&A 수정(날짜표시) - (135p)  기준 부록 2 삭제 - (135p) 표준양식 부록 2로 추가 ※ 정보항목 개정이력은 32-36p 참조	한국신용정보원

# 개요

1.1. 목 적	2
1.2.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2
1.3. 구성	3
1.4. 용어의 정의	3

PART.

1

개요

### 1.1. 목 적

○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산업'이라 한다)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대략을 안내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실행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마이데이터산업의 안정적인 출범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1.2.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산업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하여 적용함
- 본 가이드라인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및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등) 에는 우선할 수 없음을 유의
- 개인신용정보 전송의 기술적·구체적 절차는 금융보안원 발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및「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표준 API 규격」,「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을 따름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및 제22조의9에 따라 전송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은 본 가이드 라인을 표준으로 하여 적용

## 1.3. 구성

- 본 가이드라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개요)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적용 방법 및 용어의 정의를 설명
  - (제2장 마이데이터산업) 마이데이터산업의 개요. 운영방안 및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등을 설명
  - (제3장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전송의 의의, 주요 당사자, 전송 대상 정보. 전송 요구 방법 및 절차. 정보 전송의 방법 및 절차 및 기타 의무 등을 설명
  - **(제4장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및 역할을 설명
  - (**제5장 Q&A**) 주요 질문사항을 설명

#### 1.4. 용어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음. 그 외 용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감독규정,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표준 API 규격」.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가급적 신용정보법 및 관련 법규의 용어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일부 용어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별도로 정의하였음(고객, 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 마이데이터사업자 등)

-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 거래내용, 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고객)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 신용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주체
- (정보제공자)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 **(정보수신자)** 정보제공자가 전송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신하는 자
- **(마이데이터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마이데이터서비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및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
- **(본인인증)** 고객이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때, 정보제공자가 고객이 해당 정보의 정보주체이며 전송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
- **(개별인증)** 각각의 정보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개별적 으로 고객이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의 본인인증(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정보를 전송 요구할 때 마다 정보제공자의 수만큼 인증이 이루어짐)
- **(통합인증)** 다수의 정보제공자가 공통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을 동시에 인증하는 방식의 본인인증

- **(인증기관)** 통합인증을 위한 본인인증수단을 발급하고, 발급된 인증수단을 관리 하는 기관
-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간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송규격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마이데이터산업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전송규격· 표준화, 중계기관 운영, 수수료 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등을 지원하는 기관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마이데이터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로써 정보 제공자 및 마이데이터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고객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내역 일괄조회 서비스 등(이하 '종합포털'이라 한다)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기관의 등록 및 관리, 자격증명의 발급 및 관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내역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 (이하 '종합포털'이라 한다)
- (중계기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API 요청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계하는 신용정보법 상 기관
- **(거점중계기관)**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고객의 전송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를 제외한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기관
- (자격증명) API 요청시 상호간 자격을 인증하고 식별하기 위해 종합포털로부터 발급받는 값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 (접근토큰) API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받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정보
- (TLS인증서)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상호인증 및 암호화 채널 형성을 위한 인증서

# 마이데이터산업

2.1. 마이데이터산업	8
2.2.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 방안	12
2.3.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16
2.4.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22

PART.

D
2

# 마이데이터산업

### 2.1. 마이데이터산업

○ (의의)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조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1호의3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허가)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여 허가산업으로 운영

####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 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되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으며, 전문인력 요건을 두지 않는 등 진입장벽 최소화
  - 다만,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 구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등 정보보호 및 보안 의무는 부여
  - <sup>①</sup>핀테크 생태계 조성. <sup>②</sup>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 <sup>③</sup>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sup>④</sup>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허가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발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Data) 허가 매뉴얼」참고)
- (허가 예외)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는 마이데이터산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 예시 마이데이터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의 예시(허가 불필요)

- 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기업신용 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③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 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④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 ⑤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 (경영·부수 업무) 통합조회 서비스와 더불어 경영·부수 업무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종합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겸영업무는 다음과 같음

	겸영업무	비고	이해상충 방지체계
1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방식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으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음	필요
2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필요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필요
4	신용정보업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 신용정보업을 영위 할 수 있음	필요
5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록등을받아영업중인금융회사의 경우 해당법령에서 허용된 고유· 겸영·부대업무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은행업, 신용카드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음	필요
6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 (비금융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관계법률을 제외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무((예시)불법사채업등)를 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와 겸영 가능	필요
7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한도를 비교· 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함	필요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필요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필요

# -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부수업무는 다음과 같음

	부수업무	비고	이해상충 방지체계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통합조회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재무현황, 소비패턴 등의 데이터 분석정보를 본인에게 제공 하는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 하는 업무	전기·가스·수도료 납부 정보,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통합조회 대상 신용정보 외에도 본인이 직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계좌제공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필요
4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6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7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8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9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10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 제공하는 업무		
11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2.2.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 방안

#### 가. 원칙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마이데이터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산업임을 이해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함을 원칙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고객 이익 우선)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전송요구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도 위임받을 수 있는 등 마이데이터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이 상호 충돌할 우려(이른바 본인-대리인 문제와 유사한 상황\*)가 있음. 그러므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Principal-agent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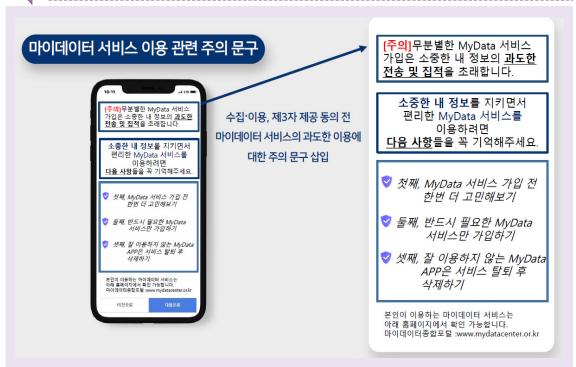
• 개인 또는 집단이 의사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주인이 대리인을 완벽하게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리인이 본인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 나.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시 유의 사항

- (과도한 가입 마케팅 금지)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
  - (실행방안) 통상적인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 지급 권장
    - \* 타 법령 사례 : (은행) 3만원, (카드) 평균 연회비의 100분의 10, (보험)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현황 안내)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
  - (실행방안) 소비자는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별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 조회 등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고시





# 예시 「마이데이터 종합포털」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정보 제공화면

- (특화 서비스 제공 항목 표시) 고객이 마이데이터서비스에 가입시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화서비스 항목을 제공받는지 등을 안내
  - (실행방안)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해당기관에서 제공할 특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예시 : 본 기관은 금융투자분야에 최적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

#### 다. 알고하는 동의 원칙

○ (알고하는 동의 및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전송요구 절차 등은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제공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알고하는 동의 및 전송요구의 원칙

- ①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용정보주체가 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② PC나 문서에 비하여 화면이 작은 모바일 환경이므로 작은 글자 크기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
- 마이데이터 앞 정보를 전송하는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및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동 절차에 부수되는 동의서 및 전송요구서 양식은 부록 3 참고하여 위의 '알고하는 동의 및 전송요구의 원칙'에 따라 구현

## 2.3.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 가. 이해상충 방지 내부관리규정 마련(법 제22조의9②)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마이데이터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함

####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말한다)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편향·왜곡하여 분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사항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내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 관리계획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스크린 스크레이핑 금지(법 제22조의9③)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거나. 접근권한을 확보하거나. 접근 수단에 대한 지배권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 및 보관함으로써 고객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됨

####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 2. 본임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③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위임·대리·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 1.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 3.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 (마이데이터 TF 및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결과) 대·내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보 제공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준비기간 부족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테스트기간 추가 요청사항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을 반영 추가일정을 검토
  - (1단계: API 시스템 테스트) 2021.11.30.까지 연동테스트 준비 및 연동테스트 완료
  - **(2단계: API 시범 운영)** 2021.12.1.부터 API를 통한 對고객 서비스 실시
  - (3단계: API 전면 시행) 2022.1.1.부터 스크레이핑 금지

#### 다. 정기전송 비용 부담(법 제22조의96)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 시행은 1년 유예

#### 元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처리비용 및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라. 전송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영 제18조의6⑩)

○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경우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함

#### 마. 전송 기록 정보주체 통지(영 제18조의6⑩)

○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함

#### 바. 손해배상책임 이행 책임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법 제43조의3)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최소 가입금액 10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거나 1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 사. 금지행위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법 제22조의9①)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1.)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 유도 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영 제18조의6①2.)

-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영 제18조의6①3.)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4.)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5.)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6.)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영 제18조의6①7.)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영 제18조의6①8.)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9.)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영 제18조의6①10.)
-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감독규정 제23조의3①1.)

- 신용정보주체를 대리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및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한 후에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저장 하는 행위(감독규정 제23조의3①2.)
- 개인식별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무선 마케팅등에 활용하거나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감독규정 제23조의3①3.)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요구를 즉시 철회하지 않는 행위 (감독규정 제23조의3①4.)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를 이유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전산 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감독규정 제23조의3①5.)

### 2.4.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 가. 정보제공자의 API 정보전송 의무(법 제22조의94)

○ 정보제공자는 고객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 API 방식으로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⑦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 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4.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나.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전송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영 제18조의6⑩)

○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은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함

#### 관련법령

• 시행령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⑩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 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3.1.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26
3.2. 주요 당사자	27
3.3. 대상 정보	32
3.4.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77
3.5. 정보전송 방법 및 절차	79

PART.

# 3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3.1.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 가.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 마이데이터산업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으로부터 출발하므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는 정보제공자의 의무 준수가 중요
- 전송요구에 따른 정보 전송의 일반적인 절차(이하 '일반전송절차'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를 따르며. 그 중 특히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수신자가 되어 정보를 전송받는 절차 (이하 '마이데이터전송절차')는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따름
- 일반전송절차는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표준API 규격」. 마이데이터 전송 절차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 라인 (금융보안원 발간)을 따르고. 대상정보는 본 가이드라인 제3장 3.3.을 따름

#### 나. 전송요구와 제공동의의 차이

- 제공동의에 의한 정보 제공은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행하며, 고객은 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단지 동의여부만 결정할 수 있음
- 전송요구에 의한 정보 전송은 고객이 정보 전송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자가 이를 실행하며. 고객은 자신의 정보 전송 의지를 사업자가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단순히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 정보, 전송을 하는 자, 전송받는 자, 전송주기, 전송종료 시점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sup>\*</sup>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전송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 또는 기관으로의 전송요구만 가능(마이데이터 사업자 제외)

# 3.2. 주요 당사자

### 가. 정보제공자

○ 정보제공자는 고객의 전송요구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검증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구체적 범위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 지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 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전기 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보증공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장업 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 진흥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회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연수사업법」제61조위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연수사업법」제61조위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연수사업법」제61조위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연수사업법」제61조위2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구 분	구체적 범위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 여신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5항 각호의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 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국민 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나. 정보수신자

○ 정보수신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정보수신자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구체적 범위
본인ㆍ 마이데이터사업자ㆍ 개인신용평가회사	<ul> <li>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li> <li>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li> <li>개인신용평가회사</li> <li>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li> </ul>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구체적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전기 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국민행복기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각 호의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 공제조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 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다. 중계기관

○ 마이데이터전송절차의 경우 일부 정보제공자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 송할 수 있음

####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보험회사,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 가.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자
    - 나.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과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각각 별개의 업권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본다)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인 자
      - 2)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자
    - 다.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
  -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6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 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용조사회사는 제외
  - 4.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에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

#### - 중계기관은 다음과 같음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전송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이를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업무는 신용정보원이 수행함(정보수신자 중 행정ㆍ공공기관 보유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거점중계기관

- 일반전송절차의 경우 일부 정보제공자는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거점중계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중계기관과 동일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 행정안전부\*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 \*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전송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이를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업무는 신용정보원이 수행함(정보수신자 중 행정・공공기관 보유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해당기관이 실제로 중계기관 및 거점중계기관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 필요

# 3.3. 대상 정보

### ○ 개정이력

수정날짜	대분류	변경유형	변경상세
2021-05-13	-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이드라인 〈정보전송항목(3장3절)〉 v202105-1 배포
2021-05-25	개인형IRP	항목삭제	목록정보/계좌번호 별 상태 코드
		항목명 변경	기본정보/적립금액 → 계좌잔액
		항목추가	기본정보/최초 제도 가입일: 퇴직연금 제도 최초 가입일, 날짜가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빠른 날짜
		항목추가	기본정보/(선택전송) 연금개시 시작(예정)일: 고객이 연금 개시가 되도록 지정한 날짜(예정) 또는 연금개시가 시작된 날짜
		코드변경	개별운용상품정보/상품유형 (코드) (변경전) (〈 원리금 보장(예금), 원리금 비보장(펀드) 〉〉 (변경후) (〈 원리금 보장, 원리금 비보장, 기타 〉〉
		정의수정	개인형IRP 정보항목 전체

수정날짜	대분류	변경유형	변경상세
2021-05-31	통신	코드항목 추가	고객정보/가입구분 '기타(스패머 등)' 추가
	보험	정의수정	자동차보험 정보/자동차보험 납입정보/자동차보험 보험료: 자동차보험의 총 보험료
	개인형IRP	항목추가	개인형IRP 정보/거래내역/거래번호(선택전송)
		정의수정	기본정보/최초 입금일: 연금계좌 가입일 (※ 연금계좌가입일: DC 최초 부담금 납일일(①)과 개인형IRP 최초부담금납입일(②) 중 빠른 날짜)
		정의수정	기본정보/최초 제도 가입일: DB 제도에서 퇴직금이 입금되 었을때 DB 제도의 가입일
2021-06-08	개인형IRP	선택전송	선택전송으로 변경(기본정보/최초 입금일, 최초 제도 가입일)
2021-06-23	보험	정의수정	자동차보험 정보/계약정보/자기부담금 구분 (코드): 해당 자동차보험의 최소 자기부담금 비율 (〈 20%, 30% 〉)
2021-06-24	보험	선택전송	선택전송으로 변경(보험정보/보험료납입정보/납입 기관 (코드))
2021-06-25	여수신	선택전송	고객정보/외화계좌여부, 마이너스약정 여부: 선택전송으로 변경
2021-07-07	여수신	항목추가	(선택전송) 계좌정보/거래내역/적요: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로서 정보주체가 직접 기록한 내용(자동 입력에 의한 정보 포함)
		항목추가	고객정보/적요 정보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가 보유한 수신계좌의 거래내역 중 적요 정보의 전송 요구 여부
	전자결제 정보	항목추가	거래내역/결제내역/거래메모: (선택전송) 해당 거래의 부가 정보(ex. 송금/수취인명, 상품권명, 포인트명, 적립서비스명, 기타 등)

수정날짜	대분류	변경유형	변경상세
		항목추가	고객정보/거래메모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가 보유한 계정의 거래내역 중 거래메모 전송요구 여부
			선택전송으로 변경(거래내역/결제내역/결제수단 식별키)
		선택전송	해당 결제수단이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 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선불전자	LACUTIA	선택전송으로 변경(선불발행정보/자동충전정보/충전지불 수단 식별키)
	지급수단 정보	선택전송	해당 결제수단이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 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항목추가	고객정보/거래메모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가 보유한 권면의 거래내역 중 거래메모 전송요구 여부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거래상대 식별키
		정의추가	해당 결제수단이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 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	_	정기전송 주기 변경 추가정보: (기존) 일 1회 → (변경) 주 1회
		I	
2021-07-12	카드	항목삭제	카드결제정보/리볼빙정보/기준월 삭제
	카드	정의수정	청구기본정보/월별청구금액 항목 설명 수정
	카드	항목추가	승인상세정보/정정 또는 승인취소 일시 추가
2021-07-13	여수신	선택전송	선택전송으로 변경(계좌정보/계좌기본정보/약정액)
		코드변경	계좌정보/거래내역/거래유형 (코드): (〈 신규, 출금, 입금, 출금취소(입금), 입금취소(출금), 정정(입금), 정정(출금), 기타(입금), 기타(출금) 〉〉
		코드변경	투자상품정보/거래내역/거래유형(코드): (〈 신규, 입금, 출금, 신규예약, 입금예약, 출금예약, 해지예약, 재투자, 정정(입금), 정정(출금), 기타(입금), 기타(출금) 〉〉

수정날짜	대분류	변경유형	변경상세
2021-07-14	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항목추가	고객정보/상품(구매) 분류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의 거래 내역 중 상품(구매) 구분 (코드)의 전송요구 여부
	전자결제 정보	항목추가	고객정보/상품(구매) 분류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의 결제 내역 중 상품(구매) 구분 (코드)의 전송요구 여부
			대출정보/기본정보/상환계좌번호(자동이체)
2021-07-15	여수신	정의추가	해당 결제수단이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 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코드추가	거래내역/거래유형 (코드): 기존 코드표에 '결제(5501)', ' 결제취소(5511)' 및 코드표 주석 추가
	전자결제 정보	항목삭제	고객정보/고객정보 상태 ※ 휴면계정 정보 전송이 제외됨에 따라 상태 데이터 삭제
	여수신	선택전송	선택전송으로 변경(대출정보/대출상품 잔액정보/다음 이자 상환일) ※ 실행 거래, 마이너스통장 이용 중 일부 케이스 등에서 다음 이자 상환일 데이터 부재로 인하여 선택전송으로 변경
2021-07-20	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항목추가	거래내역/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권면의 거래내역 중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전자결제 정보	항목추가	고객정보/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계정의 결제내역 중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카드	항목추가	고객정보/보유카드정보/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카드의 승인상세, 청구상세 정보 중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수정날짜	대분류	변경유형	변경상세
2021-07-26	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코드추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유형 코드 추가: 기타(입금)(5901), 기타(출금)(5902)
	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코드변경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유형 코드 변경: 적립취소(5311→5302)
	카드	데이터 예시 추가	카드업권 데이터 예시 추가
	여수신	정의추가	대출상품정보/기본정보/자동이체 기관 (코드), 상환계좌번호 (자동이체)  ※ 자동이체계좌정보: ① 대출실행 시 상환계좌번호를 미지정하거나, 지정후 해제하는 등 자동이체 관련정보가 없는 경우미화신하며,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이자 납입계좌와 대출실행계좌가 다를 경우에만 전송 ② 해당 계좌번호가 정보주체 본인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여수신	정의추가	운용리스/기본정보/자동이체 기관(코드), 상환계좌번호 (자동이체) ※ 자동이체계좌 정보: 해당 계좌번호가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여수신	정의수정	계좌정보/거래내역/거래구분 항목 설명 변경 (ex. 창구, 인터넷뱅킹, ATM 등)
	보험	정의수정	자동차보험정보/계약정보/자기부담금 금액 항목 정의 변경 '최소' 문구 추가
	선불전자지 급수단정보	정의수정	선불거래내역/거래상대 식별키 항목 정의 변경 선불 : 권면ID(명) 등
	통신	항목명 수정	청구정보/청구대상년월에서 청구년월로 항목명 수정
2021-07-30	-	_	마이데이터 서비스가이드라인 〈정보전송항목(3장3절)〉 v202106-1 배포

○ (원칙)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 권리・의무 관계에서 발생한 정보이며, 정보제공자가 별도 생성 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제외됨

#### 관련법령

- 법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 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일 것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대상) 구체적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① 시행령 별표 1의 정보 ②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③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④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음(영 제28조의3 제6항)
  -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협의되었음 (상세사항은 [부록 1] 코드표 참고)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 정기전송 주기에 따라 2가지로 분류

① 기본정보: 주 1회 전송하는 정보

② 추가정보: (변경, '21.7.14.) 주 1회 전송하는 정보

• 필수전송과 선택전송

① 필수전송: 전송요구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전송되어야하는 정보항목

② 선택전송: 데이터의 특성과 업권, 기관별 데이터 보유현황에 따라 전송 여부를 약속한 정보

☞ 선택전송항목의 경우,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송하지 않아도 무방

-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정보는 저축은행중앙회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기관이 구분되지 않음. 따라서 정보전송항목 중 아래의 항목은 개별 저축은행의 기관코드가 아닌, 저축은행중앙회의. 코드로 전송될 수 있음. ('21.6.30. 추가)
  - 여수신정보/대출상품정보/기본정보/자동이체 기관 (코드)
  - 여수신정보/운용리스/기본정보/자동이체 기관 (코드)
  - 보험정보/보험료납입 기본정보/납입기관 (코드)
  -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선불발행정보/자동충전정보/충전지불수단 기관 (코드)
  - 선물전자지급수단정보/거래내역/선물거래내역/거래상대 기관 (코드)
  - 전자결재정보/결제수단 등록정보/결제수단 기관 (코드)
  - 전자결재정보/거래내역/결제내역/결제수단 기관 (코드)
- 전자금융업권의 휴면계정(권면) 정보의 전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휴면고객의 정보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및 제공이 불가한 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정보전송 대상에서 제외함.('21.6.18.)

- 전자금융 관련 정보의 전송
  - ① 전자금융 관련 정보는 선불지급수단정보와 전자결제정보로 분리하여 전송
  - ② 선불전자지급업에 관한 정보는 선불지급수단정보를 통하여 전송하고, 그 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결제성 정보의 경우에는 전자결제정보를 통하여 정보를 전송함.
  - ③ 은행. 카드, 보험, 금투 등 전자금융업권 외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전자금융 관련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전송대상에 포함되나. 추후 반영 예정('21.6.30. 추가)
-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송 이슈('21.7.12. 업데이트) 가맹점주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 간 진행중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정보제공항목에 포함 여부 결정
  - 카드업권 승인상세정보 및 청구상세정보(적용업권: 카드사, 은행(체크카드))
  - 전자금융업권의 전자결제정보(적용업권: 전자결제대행사)

## 가. 여수신정보

- (적용업권\*) 은행, 외은지점, 할부금융, 종합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 새마을금고, 공공등
  -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Note

- 여수신정보의 투자상품정보는 은행업권이 운영중인 '펀드' 상품을 대상으로 표준화 및 구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은행업권이 보유한, 신탁, ISA 등 다른 투자상품은 현재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추후 고려 예정입니다.
- 마이너스통장의 정보 전송은 계좌정보의 기본, 추가, 거래정보 및 대출상품정보의 기본, 추가 정보 전송
- 할부금융업권의 금융리스상품 정보는 '대출상품정보' 데이터필드를 이용하여 전송하되. '외화 계좌여부'. '마이너스약정 여부' 데이터 항목은 전송하지 않습니다.

### ○ 고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	고객정보 최초생성일시	해당 금융회사에서 최초로 고객번호 채번한 날짜 (CRM 최초 등록일), 최초회원가입일 또는 고객원장이 있는 가장 빠른 일자
2	적요 정보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가 보유한 수신계좌의 거래내역 중 적요 정보의 전송 요구 여부
[2nd	d Depth] 계좌별 정보 전송	
3	계좌번호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여하는 식별번호 (전체자리수)
4	회차번호	(선택전송) 동일 계좌번호 내에서 회차별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경우의 회차 번호
5	상품명	해당 계좌의 상품명
6	외화계좌여부	(선택전송 - 수신계좌 전용) 해당 수신계좌가 외화계좌인지 여부
7	마이너스약정 여부	(선택전송 - 수신계좌 전용) 해당 수신계좌와 연결된 마이너스 대출 약정 보유 여부
8	계좌번호 별 구분 코드	해당 계좌번호의 유형 구분 코드
9	계좌번호 별 상태 코드	해당 계좌번호의 상태 구분 코드

- 4) 회차번호: 여수신업권의 상품 중, 동일 계좌번호라 하더라도 '회차'별로 특성이 상이한 상품의 정보를 해석하고 전송하기 위해 계좌정보로, 이하 정보 전송 시 SUB Key로 사용
- 8), 9) 계좌번호 별 구분 및 상태 코드: 부록의 코드표 중 '가. 계좌번호별 유형 및 상태 구분 코드' 사용

1	고객정보 최초생성일시	2001-01-01
2	적요 정보 전송요구여부	Υ

번호	계좌번호	회차번호	상품명	외화계좌	마이너스약정	구분 코드	상태
3	111111111111111	_	저축예금	N	N	1001	활동
4	222222222222	_	입출금통장	N	Υ	1001	활동
5	33333333333333	_	전세자금 대출	_	_	3270	활동
6	44444444444444	_	피델리티글로*	_	_	2001	활동

<sup>\*</sup> 지면 상 축약된 정보이며, 전체 상품명을 전송

### 계좌정보 - 계좌기본정보☞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10	저축방법	고객이 해당 계좌에 납입하는 방법 <b>〈〈 요구불식, 거치식, 정액적립식,</b> <b>자유적립식 〉〉</b>
11	계좌개설일자	금융회사에서 해당 계좌를 개설한 날짜
12	만기일	(선택전송)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가 만기(종료)되는 날짜 또는 계좌 상품의 만기가 되는 날짜
13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계좌번호에 적용된 통화코드
14	약정액	(선택전송) 예금주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금액
15	월 납입액	(선택전송 - 정기납입 상품 정보만 제공) 해당 상품에 예금주가 매월 납입 신청한 금액

13) 통화코드: 다수의 외화 계좌가 고려된 다통화 계좌의 경우, 통화별 계좌기본정보를 List 형태로 전송

#### - 데이터 예시

저축방법	계좌개설일자	만기일	통화코드	약정액	월납입액
정액적립식	2020-01-03	2021-01-02	USD	1,000	100
거치식	2020-01-03	2021-01-02	JPN	2,000	_
거치식	2020-03-05	2021-03-04	HKD	1,000	-

### 계좌정보 - 계좌잔액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16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계좌번호에 적용된 통화코드
17	현재잔액	조회 시점 계좌의 잔액
18	출금 가능액	현재잔액 중 출금할 수 있는 금액
19	적용금리	상품에 적용된 기준금리
20	최종납입회차	(선택전송) 계좌에 최종적으로(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납입한 회차

18) 출금 가능액: 마이너스통장 약정 대출 보유 계좌의 경우, 대출금을 고려한 출금 가능액 (ex. 출금 가능액 = 대출원금 + 현재잔액) 전송

# 계좌정보 − 거래내역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21	거래일시 또는 거래일자	거래가 일어난 일시 또는 일자
22	거래번호	(선택전송)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23	거래유형 (코드)	거래의 유형 구분 <b>〈〈 신규, 출금, 입금, 출금취소(입금), 입금취소</b> (출금), 정정(입금), 정정(출금), 기타(입금), 기타(출금) 〉〉
24	거래구분	해당 거래의 구분 (ex. 창구, 인터넷뱅킹, ATM 등)
25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계좌번호에 적용된 통화코드
26	거래금액	해당 계좌에서 일어난 거래의 금액
27	적요	(선택전송)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로서 정보주체가 직접 기록한 내용(자동 입력에 의한 정보 포함)
28	거래 후 잔액	거래가 일어난 후 잔액
29	납입회차	(선택전송) 해당 거래의 납입 회차

- 22) 거래번호: 21) 항목이 거래일자로 전송될 경우, 해당 일자 내 거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가 임의로 설정한 값
- 24) 거래구분: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적요와 달리, 정보제공자가 해당 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정한 값으로 정보제공자 별로 관리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코드화를 진행하지 않음.

# ● 투자상품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30	표준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펀드코드
31	납입유형 (코드)	해당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납입 유형 코드 〈〈 임의식, 적립식, 거치식 〉〉
32	개설일	보유 투자 상품의 계좌 개설일(신규일자)
33	만기일	보유 투자 상품 만기일

#### ● 투자상품정보 - 잔액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34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계좌번호에 적용된 통화코드
35	잔액	결산 후 잔액을 의미하며 투자 설정액의 수익, 손실을 감안한 금액
36	평가금액	잔고좌수 × (기준가/1000) (매입/환매 체결기준)
37	투자원금	금융상품 투자원금잔액 (선취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음.)
38	보유좌수	(선택전송) 보유한 펀드의 좌수

35) 잔액: 최초의 투자원금 이후, 결산을 통한 수익, 손실이 반영된 금액. 최초 결산 이전에는 35) 투자원금과 같은 값

#### 투자상품정보 - 거래내역□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39	거래일시 또는 거래일자	해당 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의 발생 일시
40	거래번호	(선택전송)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41	거래유형	해당 거래의 유형 구분 코드 (〈 신규, 입금, 출금, 신규예약, 입금예약, 출금예약, 해지예약, 재투자, 정정(입금), 정정(출금), 기타(입금), 기타(출금) 〉〉
42	통화코드	(선택전송) 통화코드 (ISO4217 준용), 역외펀드 등 통화코드가 필요한 경우 전송. KRW인 경우 미전송
43	기준가	(선택전송) 펀드 1000좌당 가격 (실 계약 시 기준가)
44	거래좌수	(선택전송) 해당 거래의 거래좌수
45	거래금액	투자상품 거래금액
46	거래 후 잔고평가금액	거래이후 평가금액 (매입/환매체결을 기준)

- 40) 거래번호: 39) 항목이 거래일자로 전송될 경우, 해당 일자 내 거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가 임의로 설정한 값
- 41) 거래유형: 신규예약, 입금예약, 출금예약 등 예약 거래와 이후 실 거래의 데이터는 별개로 전송 (실 거래의 데이터를 예약거래의 데이터로 대체하지 않음. 단, 해지예약의 경우에는 해지 이후 데이터 전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거래 데이터가 전송에서 제외됨.)

#### □ 대출상품정보 - 기본정보□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47	대출일	해당 대출이 실행된 날짜
48	만기일	해당 대출 계약이 만기(종료)되는 날짜
49	최종적용금리	차주가 가입한 대출상품의 최종금리
50	월상환일	(선택전송) 대출거래약정서 상 월 상환일
51	상환방식 (코드)	해당 대출의 상환방식 구분 코드
52	자동이체 기관 (코드)	(선택전송) 자동이체 등록이 된 상환계좌번호의 소속 기관 코드
53	상환계좌번호(자동이체)	(선택전송) 자동이체 등록이 된 상환계좌번호

52), 53) 자동이체계좌 정보: ① 대출실행 시 상환계좌번호를 미지정하거나, 지정 후 해제하는 등 자동이체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미회신하며,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이자납입계좌와 대출 실행계좌가 다를 경우에만 전송 ② 해당 계좌번호가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 대출상품정보 - 잔액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54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상품에 적용된 통화 코드. 원화(KRW)일 경우에는 미전송
55	대출잔액	기준일자 현재 해당 대출상품에 상환해야 하는 잔여 금액
56	대출원금	해당 대출계약의 원금 전부
57	다음 이자 상환일	(선택전송) 다음 이자 상환 예정일 ※ [할부금융업권] 차기결제일

57) 다음 이자 상환일: 조회 시점의 다음 이자 상환 예정일이며, 변경 시, 변경된 일자 전송

### 대출상품정보 - 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58	거래일시 또는 거래일자	해당 계좌에서 거래가 일어난 날짜와 시간	
59	거래번호	(선택전송)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60	거래유형	해당 거래의 유형 <b>〈〈 실행, 상환, 정정, 기타 〉〉</b>	
61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상품에 적용된 통화 코드. 원화(KRW)일 경우에는 미전송	
62	거래금액	해당 계좌에서 일어난 해당 거래(상환)의 금액	
63	거래 후 대출잔액	해당 계좌에서 거래가 일어난 후 남은 잔여 대출 금액	
64	거래금액 중 원금	해당 거래(상환) 금액 중 원금	
65	거래금액 중 이자	해당 거래(상환) 금액 중 이자	
66	환출이자	(선택전송) 고객에게 환출된 이자 금액	

[2nd Depth] 적용 이자별 전송

- 64) 거래금액 중 이자가 산출되기 위해 적용된 개별 이자 내역을 구분하여 각기 전송

67	OITI조근 /그ㄷ\	해당 거래의 이자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 코드
07	이자종류 (코드)	〈〈 정상이자, 지연이자, 잔액연체이자, 기타 〉〉
68	이자적용시작일	이자 계산기간의 시작일
69	이자적용종료일	이자 계산기간의 종료일
70	적용이율	해당 대출 거래(상환)시 납입한 이자의 이자율
71		이자 기간과 적용이율을 통해 계상된 금액
/	이자 금액	※ [할부금융업권] 선택전송 가능

59) 거래번호: 58번 데이터항목이 거래일자로만 전송될 경우, 해당 일자 내 거래의 순서를 확인하 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임의로 설정한 값

거래일시	거래번호	거래유형	거래금액		래 후 출잔액	거래금액 경 원금	등 거래금액 · 이자	중 환출이자
21.4.21. 07:30:00	-	상환	1,437,000	99,0	00,000	1,000,000	437,000	) –
	번호	이자종류	이자적용시작	남일	이자적	용종료일	적용이율	이자 금액
	1	정상이자	2021.3.1		202	1.3.31.	3.6%	300,000
	2	지연이자	2021.4.10	0	202	1.4.20.	5.0%	137,000
21.5.21. 07:30:00	_	상환	1,297,000	98,0	000,000	1,000,00	00 297,00	O –
	번호	이자종류	이자적용시작	남일	이자적	용종료일	적용이율	이자 금액
	1	정상이자	2021.4.1		202	1.4.30.	3.6%	297,000

#### ○ 운용리스 - 기본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72	대출일	해당 운용리스가 실행된 날짜
73	만기일	해당 운용리스가 만기(종료)되는 날짜
74	월상환일	운용리스 계약서 상 월 상환일
75	다음 납입 예정일	다음 월리스료 납입 예정일
76	상환방식 (코드)	해당 운용리스의 상환방식 구분 코드
77	자동이체 기관 (코드)	(선택전송) 자동이체 등록이 된 상환계좌번호의 소속 기관 코드
78	상환계좌번호(자동이체)	(선택전송) 자동이체 등록이 된 상환계좌번호

- 76) 상환방식 (코드): 부록 중 '상환방식 코드'를 이용하여 전송
- 77), 78) 자동이체계좌 정보: 해당 계좌번호가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 ○ 운용리스 – 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회차번호(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79	79 거래일시 해당 운용리스에서 거래가 일어난 날짜와 시간	
80	거래번호	(선택전송)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81	거래유형	운용리스 상품의 거래 유형 <b>〈〈 실행, 일부상환, 기타 〉〉</b>
82	거래금액	해당 계좌에서 일어난 해당 거래(상환)의 금액

- 80) 거래번호: 79번 데이터항목이 거래일자로만 전송될 경우, 해당 일자 내 거래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임의로 설정한 값
- 81) 거래유형: 모든 거래금액(원금, 이자,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전송하되, 리스료(원금, 이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거래유형을 '일부상환'으로 하고, 기타비용만 수납하는 경우는 '기타'로 전송

### 나. 보험정보

#### Note

- 보험정보의 전송은 현재 주계약 기준 '장기인보험'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추후 일반보험 및 단기 보험으로의 확장이 진행될 예정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계약자'가 전송요구하며, 모든 보험상품의 정보는 '계약자'에 의한 전송요구만 가능(2021.4.27.)
- (**적용업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우정사업본부 등
  -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고객정보 - 보험상품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	증권번호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증권번호	
2	상품명	보험 상품의 공식 명칭	
3	보험종류 구분 (코드)	해당 계약의 보험종류 구분	
4	계약상태 (코드)	현재 주계약의 계약상태 (〈 정상, 실효, 만기, 소멸 〉)	

- 3) 보험종류 구분 (코드): 부록 중 보험종류 구분(코드)
- 4) 계약상태 (코드): 부록 중 보험계약상태(코드)

# ○ 고객정보 - 보험대출상품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5	계좌번호	해당 고객이 보유한 대출 원장의 대출 식별 번호
6	상품명	해당 대출 상품의 공식 명칭
7	계좌번호 별 구분 코드	해당 계좌번호의 유형 구분 코드
8	계좌번호 별 상태 코드	해당 계좌번호의 상태 구분 코드

5) 계좌번호: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집중하고 있는 항목 중 '계좌번호' 항목과 동일

### 보험정보 - 보험계약정보□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증권번호

22

주피보험자 여부

F	선호	항목	정의
	9	갱신여부 (여부)	갱신형 / 비갱신형 상품 구분(주계약 기준)
•	10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11	만기일자	보험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
	12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상품에 적용된 통화 코드. 원화(KRW)일 경우에는 미 전송
	13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14	변액보험 여부	상품의 변액보험 해당 여부
	15	유니버셜 여부	상품의 유니버셜 해당 여부
	16	연금개시일	(선택전송) 연금수령 시작일
	17	연금수령주기	(선택전송) 실제 약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전송 (〈 월, 3개월, 6개월, 1년 〉)
	18	대출실행 가능 상품 여부	대출 계약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 값 (현재 대출 실행 가능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19	피보험자수	해당 보험 계약에 포함된 피보험자의 수
	[2nd	Depth] 피보험자 정보	보 전송 - 특약정보 호출용
	20	피보험자번호	정보제공자가 임의로 설정한 해당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
	21	피보험자명	해당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 이름(첫 글자와 끝 글자를 제외하고 마스킹 처리)

- 9) 갱신여부: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의 성질과 상관없이 주계약 기준으로 판단
- 18) 대출실행 가능 상품 여부: 대출실행 가능 상품이며 대출 실행 가능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값이 'Y'로 전송될 수 있음.

피보험자가 본 계약의 주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피보험자번호: 특약정보의 관리 및 전송이 피보험자별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특약정보 조회 시 피보험자번호를 호출키로 사용.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계약자가 개인인 단체보험 등), 10명까지의 정보만 전송 가능

# 보험정보 - 특약정보\*▼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증권번호, 피보험자번호

\* '보험정보 – 특약정보'는 피보험자번호 별 정보 전송

번호	항목	정의
23	특약명	기본담보 포함, 할인할증특약 등 제도성 특약 내용 포함
24	특약의 상태 (코드)	현재 특약의 계약상태 <b>〈〈 정상, 실효, 만기〉〉</b>
25	특약만기일자	특약의 만기일자
26	특약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특약보험금)
27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상품에 적용된 통화 코드. 원화(KRW)일 경우에는 미전송
28	특약의 유형	해당 특약의 의무부과특약 또는 주계약 등 필수성 여부 <b>(( 필수, 선택 ))</b>

## 보험정보 - 보험료납입 기본정보☞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증권번호

번호	항목	정의
29	납입기간구분 (코드)	납입 만기 기간 구분 <b>〈〈 일시납 / 년납 / 세납 〉〉</b>
30	납입주기 (코드)	납입 주기 구분 <b>〈〈월납 / 2개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일시납〉〉</b>
31	총 납입 횟수	보험 약정 납입기간에 따른 총 납입 횟수
32	납입기관 (코드)	(선택전송) 보험료의 납입 방법이 '자동이체'일 경우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기관 코드
33	납입일자	(선택전송) 보험 계약서 상, 계약자가 작성한 지정 이체 혹은 결제 일자
34	납입종료일자	보험료 납입 종료일
35	납입 보험료	보험료 납입 주기에 따른 보험료 납입금액
36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상품에 적용된 통화 코드. 원화(KRW)일 경우에는 미전송
37	자동대출납입 신청 여부 (여부)	해당 보험사의 대출상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대출납입 신청 여부

# 보험정보 - 납입내역▼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증권번호

번호	항목	정의
38	납입일자	해당 납입 내역의 납입일자
39	납입연월	해당 납입 내역의 유효월 → 다(多)월 납일 경우, 마지막 유효월
40	납입회차	해당 납입 내역의 납입 회차
41	실납입 보험료	고객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
42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상품에 적용된 통화 코드. 원화(KRW)일 경우에는 미전송
43	수금방법 (코드)	고객의 보험료 납입 방법 유형 <b>〈〈 지로, 자동이체, 직납, 신용카드,</b> 급여공제, 간편결제, 기타 〉〉

38), 39) 납입내역: 납입종료일자 이후의 납입내역의 경우, 납입연월은 '월대체보험료 충당월', 납입회차는 '월대체보험료 충당 회차' 정보를 전송

### 자동차보험정보 - 계약정보☞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증권번호

번호	항목	정의
44	차량번호 (코드)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번호 (없을 시, 차대번호)
45	자동차보험 구분(코드)	해당 자동차보험의 유형 구분
46	계약자 차량명	해당 자동차보험의 차량 모델명
47	보험시기	자동차 보험의 시작일
48	보험종기	자동차 보험의 종료일
49	연령특약	전연령 / 21세 / 26세 / 30세 등
50	운전자한정특약	누구나 / 기명1인 / 가족한정 / 부부 등
51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 <b>〈〈 가입 / 미가입 〉〉</b>
52	자기부담금 구분 (코드)	해당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 < 20%, 30% >>
53	자기부담금 금액	해당 자동차보험의 최소 자기부담금 금액

46) 계약자 차량명: 보험개발원 차량 모델등급 2단계수준(ex. 그랜져 IG, 아슬란, G4 렉스턴 등)

# 자동차보험정보 - 납입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증권번호, 차량번호

번호	항목	정의
54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동차보험의 총 보험료
55	납입회차	자동차보험 보험료 납입회차 (일시불일 경우 '1')
56	실납입 보험료	해당 자동차 보험의 실제 납입금액
57	수금방법 (코드)	고객의 보험료 납입 방법 유형 《〈 지로, 자동이체, 직납, 신용카드, 급여공제, 간편결제, 기타 〉〉

# 보험대출상품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58	대출일	대출 실행일자
59	만기일	해당 대출 계약이 만기(종료)되는 날짜
60	상환방식 (코드)	해당 대출의 상환방식 구분 코드
61	증권번호	해당 대출과 연계된 보험 주계약의 증권번호

# 보험대출상품 - 잔액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62	통화코드	(선택전송) 대출원금 및 대출원금잔액의 통화 코드(ISO 4217 준용), 원화(KRW)일 경우 미전송
63	대출잔액	해당 대출상품에 상환해야 하는 잔여 금액
64	대출원금	총 대출한 금액, 대출 합계 금액
65	다음 이자 상환일	다음 이자 상환 예정일

# ○ 보험대출상품 - 이자 납입 및 대출원금 상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66	거래일시	대출 상환일시
67	거래번호	(선택전송) 거래가 이루어진 일자 별 해당 거래의 순번
68	통화코드	(선택전송)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통화의 코드(ISO 4217 준용), 원화 (KRW)일 경우 미전송
69	대출원금상환액	해당 거래의 원금 상환 금액
70	이자납입액	해당 거래의 이자 납입 금액
[	2nd Depth] 적용 이자별	전송
7	1 이자적용시작일	(선택전송) 이자 계산기간의 시작일

74	이자종류 (코드)	(선택전송) 해당 거래의 이자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 코드 《〈 정상이자, 연체(지연)이자, 기타 〉〉
73	적용이율	(선택전송) 해당 대출 거래(상환)시 납입한 이자의 이자율
72	이자적용종료일	(선택전송) 이자 계산기간의 종료일
71	이자적용시작일	(선택전송) 이자 계산기간의 시작일

# 다. 카드정보

#### Note

- 카드대출정보는 조회 시점 기준 대출 잔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행 중인 대출에 대하여 전송
- 체크카드는 카드기본정보와 승인 상세정보 호출 가능(그 외 정보는 전송하지 아니함.)
- (적용업권\*) 신용카드업, 겸영여신업, 은행, 금투, 전금 등
  -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고객정보 보유카드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	카드번호	개별 카드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16~19자리 번호 (해외카드는 19자리 가능) ※ 단, 카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킹 처리 후 일부 번호만 제공 ("-" 제외)
2	카드식별자	데이터 보유자가 부여한 카드의 고유 식별자
3	카드상품명	상품명 이름이 긴 경우, 카드사 청구서 내 상품명으로 표기
4	본인/가족 구분(코드)	카드상품 계약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인지 여부
5	카드구분(코드)	해당 카드상품의 종류(신용·체크(직불포함)·소액 신용결제 이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6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카드의 승인상세, 청구상세 정보 중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 카드정보 - 카드기본정보☞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카드식별자

번호	항목	정의
7	교통 기능(여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 여부
8	현금카드기능(여부)	ATM 등을 통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카드 기능 여부
9	결제은행(코드)	해당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거래금융회사에 부여된 코드
10	카드브랜드(코드)	결제를 위한 카드사 브랜드 코드
11	상품 연회비	해당 카드상품을 사용하는데 지불하는 연간비용
12	발급일자	카드 발급 시 해당 카드번호가 생성된 최근일자

### ▼인트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3	포인트명	카드사용금액 및 사용처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카드사가 관리 가능한 대표 포인트 (또는 자사 관리 포인트)		
14	잔여 포인트	기준일자 현재 금융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잔여 포인트		
15	M+2월 소멸예정포인트	2개월 후 소멸예정포인트		

# 월별 카드 이용정보 - 월별 청구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6	결제순번	(선택전송) 청구내역이 복수 개일 경우 각 청구내역을 식별하기 위한 순번			
17	월별 청구금액	회원에게 청구한 월별 이용대금			
18	결제일	결제일 2자리			
19	청구년월	청구서 작성 기준월			
20	결제년월일	실제 결제일			

# 월별 카드 이용정보 - 청구 상세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개인식별키, 청구연월, 결제순번(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21	사용일시 또는 사용일자	금융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짜와 시간
22	카드식별자	청구서 내 복수개의 카드를 구분하기 위해 카드 식별자 회신
23	거래번호	(선택전송)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사용일시가 일자로만 관리되는 경우 개별 거래 구분)
24	이용금액	건별 이용 금액
25	통화코드	(선택전송) ISO4217 준용,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KRW 적용
26	가맹점명	(선택전송) 금융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곳의 명칭
27	신용판매 수수료	일시불·할부거래, 해외 이용수수료 및 연체수수료 등 일시불 거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수수료
28	전체 할부회차	(선택전송) 나누어 상환하기로 계약한 원리금의 전체 회차
29	현재 할부회차	(선택전송) 나누어 상환하기로 계약한 원리금의 현재 회차
30	할부 결제 후 잔액	(선택전송) 기준일 현재 나누어 상환하기로 계약한 원금의 잔액
31	상품구분 (코드)	상품구분 <b>〈〈 일시불, 신판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연회비, 기타 〉〉</b>

- 22) 카드식별자: 청구서 내 복수개의 카드를 구분하기 위해 카드식별자 전송
- 23) 거래번호: 사용일시가 일자로만 관리되는 경우 개별 거래 구분을 위해 정보제공자가 설정한 일자별 거래 순번
- 24) 이용금액: 항목의 경우 음수 표기 가능(이전달 매입취소 금액이 청구금액보다 큰 경우)

사용일시	카드 식별자	거래 번호	이용 금액	통화 코드	가맹점명	전체 할부회차	현재 할부회차	신용판매 수수료	상품 구분
2021.7.24. 13:00:00	카드A	_	20,000	_	AAA	_	_	_	일시불
2021.7.25. 09:00:00	카드B	_	55,000	-	BBB	_	_	_	일시불
2021.7.26. 00:00:00	카드B	_	300,000	_	CCC	5	2	3,000	신판 할부

### 일별 카드 이용정보 - 결제 기본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32	리볼빙 약정 여부	정보주체(고객)의 리볼빙 약정 여부
33	결제순번	(선택전송) 청구내역이 복수개일 경우 각 청구내역을 식별하기 위한 순번
34	결제예정일	해당카드(번호)를 조회하는 시점에 대금을 납부해야할 가장 가까운 예정 날짜
35	결제예정금액	해당카드(번호)를 조회하는 시점에 대금을 납부해야할 가장 가까운 예정 날짜에 출금예정인 금액

- 35) 결제예정금액: 일시불, 신판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필수 포함
  - 나머지 상품의 경우 각 카드사 정책에 따라 포함여부를 결정하며 추후 업데이트 예정

### ○ 일별 카드 이용정보 - 리볼빙 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36	신청일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한 일자
37	최소결제비율	월별로 금융기관에 결제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율
38	최소결제금액	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리볼빙 수수료 리볼빙 대상 외 금액의 합계
39	약정결제비율	(선택전송) 회원이 카드사에 리볼빙 이용을 위해 선택한 결제비율
40	약정결제금액	(선택전송) 회원이 카드사에 리볼빙 이용을 위해 선택한 결제금액
41	리볼빙 이월잔액	전송시점 기준 월별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월잔액

신청일	최소결제비율	최소결제금액	약정결제비율	약정결제금액	리볼빙 이월잔액
2021.6.26.	10%	200,000	40%	-	100,000

# ○ 일별 카드 이용정보 - 승인 상세정보 (건별 카드 이용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42	승인번호	카드 승인시 각사에서 발행한 번호
43	결제상태	해당 승인번호의 조회시점 결제상태 (( 승인/승인취소/정정 ))
44	사용구분(신용/체크)	해당 결제의 신용/체크 구분 <b>〈〈 신용/체크 〉〉</b>
45	승인일시	금융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짜와 시간
46	정정 또는 승인취소 일시	(선택전송) 정정 또는 승인취소가 발생한 일시
47	가맹점명	(선택전송) 금융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곳의 명칭
48	이용금액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 (할부 시 전체금액으로)
49	정정 후 금액	(선택전송) 정정 후 이용 금액(결제상태가 '정정'일 경우에만 전송)
50	[국내승인]전체 할부회차	(선택전송) 나누어 상환하기로 계약한 원리금의 전체 회차
51	[해외승인]결제(승인) 국가코드	카드 승인 국가의 국가코드 (ISO 1366-1 alpha-2 준용)
52	[해외승인]결제(승인) 시 통화코드	카드 승인 시 선택한 통화코드 (ISO 4217 준용)
53	[해외승인]원화	(선택전송) 원화로 환산한 금액

43) 결제상태: 동일 승인번호의 결제상태를 통해 승인, 승인취소, 정정 확인 가능

승인번호	결제상태	사용구분	승인일시	정정 또는 취소일시	가맹점명	이용금액	정정 후 금액	전체 할부회차
12345678	승인	신용	2021.5.8. 13:00:00		AAA	10,000	_	_
12345678	승인취소	신용	2021.5.8. 13:00:00	2021.5.9. 11:00:00	AAA	-10,000	_	_
12121212	승인	신용	2021.5.9. 15:30:12		BBB	8,000	_	-

# 카드대출정보 - 대출 목록☞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54	단기대출 (여부)	정보주체(고객)가 단기대출 실행 중이거나, 해지했지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True 회신
55	장기대출 (여부)	정보주체(고객)가 장기대출 실행 중이거나, 해지했지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True 회신

# 카드대출정보 - 단기대출 이용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56	이용일시	해당 단기대출상품(현금서비스)을 이용한 날짜와 시간
57	이용금액(취급액)	해당 단기대출상품(현금서비스)을 이용한 금액 (매출이 발생한 금액)
58	단기대출잔액	기준일자 현재 해당 단기대출상품(현금서비스)에 상환해야 하는 잔여 금액
59	결제예정일	해당 단기대출상품(현금서비스) 대금이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는 날짜
60	이자율	단기대출상품(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자율

이용일시	이용금액	단기대출잔액	결제예정일	이자율
2021.7.20. 14:00:00	5,000,000	10,000,000	2021.7.31.	10%

# ○ 장기대출 이용정보 S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61	대출일시	해당 대출이 실행된 날짜와 시간 (확정일자로 관리)
62	일자의 대출회차	(선택전송) 해당 일자에 실행된 대출의 회차
63	대출종류	(선택전송) 해당 장기대출상품(카드론)의 종류 구분
64	상품명	해당 장기대출상품(카드론)의 이름(이지론, 직장인론 등)
65	이용금액	해당 대출계약의 원금 전부
66	이자율	장기대출상품(카드론) 이용에 따른 이자율
67	만기일	해당 장기대출상품(카드론) 계약이 만기(종료)되는 날짜
68	장기대출 잔액	기준일자 현재 해당 장기대출상품(카드론)에 상환해야 하는 잔여 금액
69	상환방법(코드)	장기대출상품(카드론)을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70	상환액 중 이자	해당 상환된 금액 중 이자

대출일시	대출종류	상품명	이용금액	이자율	만기일	장기대출 잔액	상환방법 (코드)	
2021.1.12	대출종류1	직장인론	12,000,000	10%	2021.12.31	5,000,000	02	700,000

# 라. 금융투자정보

### ○ (적용업권\*)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고객정보 - 보유계좌정보□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	계좌번호	증권 계좌번호
2	계좌명	계좌 소유자의 실명 (예: 홍길동)
3	계좌종류	해당 계좌의 종류
4	계좌상태	해당 계좌의 상태

# 계좌정보 - 기본정보□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5	계좌개설일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일자
6	세제혜택 적용여부	해당 계좌 세제혜택 적용여부 주1) 세재혜택 적용 계좌: 'Y' 주2) 세재혜택 미적용 계좌: 'N'
7	예수금	계좌별 현금 잔액 주1) 조회시점 기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총 잔액 주2) 미수 발생 시, 미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이너스 형태로 표기 (예: -2000)
8	신용 융자	해당계좌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매수대금의 총액 주1) 신용 약정을 하지 않은 계좌: '0'으로 표기 주2) 신용 약정을 하고 상환해야 할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
9	대출금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총 합계 주1) 조회시점 기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전체 담보 대출 금액
10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상품에 적용된 통화 코드. 원화(KRW)일 경우에는 미전송

# 계좌정보 - 거래내역□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11	종목명(상품명)	거래가 발생한 상품의 명칭
12	종목코드(상품코드)	(선택전송)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13	거래일시	거래가 발생한 기준일(시) 주1) 입출금 거래인 경우: YYYYMMDDHHMMSS 주2) 입출금이 아닌 모든 거래: YYYYMMDD
14	거래종류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15	거래종류 상세	(선택전송) 상세 거래 종류 (코드가 아닌 상세 거래 종류 명)
16	거래수량	해당 종목이 본 거래에서 거래된 총 수량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수량이 아닐 수 있음)
17	거래단가	해당 종목이 본 거래에서 거래된 단위 가격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단위 가격이 아닐 수 있음)
18	거래금액	해당 종목이 본 거래에서 거래된 총 금액
19	정산금액	거래대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 주1) 거래대금 - 세금 - 증권사 수수료
20	거래 후 잔액	조회 대상 기간 마지막 거래 이후 해당 계좌의 현금 잔액(예수금)
21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상품에 적용된 통화 코드. 원화(KRW)일 경우에는 미전송

# ○ 상품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22	상품종류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23	상품종류 상세	CMA, RP, CD, ETF 등 상세 상품 종류 (코드가 아닌 상품종류 상세 명)
24	상품코드(종목코드)	상세사항 코드표 참고
25	상품명	해당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

# ○ 상품정보 - 상세정보1 (연금 외 모든 상품)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26	매입금액	(선택전송) 조회시점 기준 해당 계좌 보유상품별 총 매입 금액 (거래금액 산정기준과 동일)
27	보유수량	(선택전송) 조회시점 기준 해당 계좌 보유상품별 수량 (일부 금융 투자상품의 경우 수량이 아닐 수 있음)
28	매도가능수량	(선택전송) 조회시점 기준 해당 계좌 보유상품별 수량 중 매도가 가능한 수량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수량이 아닐 수 있음)
29	평가금액	(선택전송) 조회시점 기준 해당 계좌 보유상품별 평가 금액

# ○ 상품정보 - 상세정보2 (연금상품)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30	가입일자	(선택전송) 해당 연금상품 가입일자(해당상품 포함계좌에 최초 납입된 일자)
31	납부총액	(선택전송) 조회 시점 기준 납부된 총액
32	기출금액	(선택전송) 조회 시점 기준 출금한 총액
33	최종납입일	(선택전송) 실제 최종 납입한 일자
34	연금기수령액	(선택전송) 조회시점 기준 연금 수령총액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

#### Note

- 개인이 다수의 권면을 보유한 경우 권면별로 데이터를 모두 전송
- 본인확인이 불가\*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송대상에서 제외 (ex. 선불 교통카드 등)
  - \* 주민등록번호, CI 모두 미보유

### ○ (적용업권\*) 선불전자지급업, 카드, 은행 등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고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	권면ID	권면을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 보유자가 부여한 권면의 고유 식별자
2	권면명	권면의 발행자가 설정한 공식 명칭
3	가입일	권면별 최초 정보 생성일(ex. 권면 발행일, 회원 가입일)
4	권면한도	회원에게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한도
5	자동충전 등록 여부	권면에 등록된 자동충전 정보 유무 <b>〈〈 Y / N 〉〉</b>
6	계정ID [List]	(선택전송) 권면에 하나 또는 다수의 계정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각 계정을 구별할 수 있는 Key (ex. 계정ID)
7	거래메모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가 보유한 권면의 거래내역 중 거래메모 전송요구 여부
8	상품(구매) 분류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의 거래내역 중 상품(구매) 구분 (코드)의 전송요구 여부
9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권면의 거래내역 중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10	통화코드	(선택전송) 해당 상품에 적용된 통화 코드. 원화(KRW)일 경우에는 미전송

3) 가입일: CI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키 수집 이전의 금융정보는 전송요구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식별키 수집일자가 회원가입일보다 이후일 경우, 개인식별키 수집일자 전송

- 4) 권면한도: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무기명식 권면한도(현재 50만 원), 실지명의가 확인된 은행 계좌와 연결하여 발행한 기명식 권면한도(현재 200만 원)
- 6) 계정ID [List]: 동일한 계정ID를 복수 개 사용하는 기관(ex.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고객이 옥션, 지마켓 계정ID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존재)의 경우 계정ID\_사이트명 등과 같이 고객이 식별 가능한 값 회신

#### 선불발행정보 - 선불잔액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권면ID, 계정ID\*(Optional)
- \* 6) 계정ID [List]에 포함된 값 중 하나

번호	항목	정의
11	총잔액	선불전자지급수단 총 잔액
12	충전포인트 잔액	(선택전송) 연결된 은행계좌를 통하여 충전한 금액중 잔액
13	적립포인트 잔액	(선택전송) 자사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적립된 금액중 잔액
14	적립예정	(선택전송) 향후 일정기간내 적립 예정인 금액
15	소멸예정	(선택전송) M+2개월내 소멸 예정인 금액

#### <u>선불발행정보 - 자동충전정보</u>☞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전송단위: 권면ID, 계정ID(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16	충전지불수단 기관 (코드)	자동충전을 위해 등록된 결제(충전)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코드
17	충전지불수단 식별키	(선택전송) 자동충전을 위해 등록된 결제(충전)수단을 식별하기 위한 값 1. 카드: 카드번호(마스킹포함), 2. 은행: 계좌번호, 3. 선불(머니): 선불지급수단명, 4. 무통장: "무통장", 5. 기타: "기타"
18	충전조건 (코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특정 기준에 따라 자동충전하기 위한 조건
19	기준날짜	(선택전송) 충전 기준 날짜
20	기준금액	(선택전송) 하한 기준금액
21	충전금액	(선택전송) 충전될 금액

17) 충전지불수단 식별키: 해당 충전지불수단이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 거래내역 - 선불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전송단위: 권면ID, 계정ID(Optional)

번호	항목	정의
22	거래유형 (코드)	전급업 거래유형(코드)의 선불금융거래 중 해당 거래의 거래유형
23	거래일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일시
24	거래번호	(선택전송) 결제일시 데이터가 년월일까지만 전송되어 결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일자의 거래 순서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설정한 순번
25	거래금액	해당 거래의 금액
26	거래 후 잔액	(선택전송) 해당 거래 후 잔액
27	거래상대 기관 (코드)	(선택전송) 거래 상대 금융기관의 기관 코드
28	거래상대 식별키	(선택전송) 1. 카드: 카드번호(마스킹포함), 2. 은행: 계좌번호, 3. 선불: 권면ID(명) 등
29	거래메모	(선택전송) 해당 거래의 부가 정보 ex) 상품권명, 포인트명, 기타, 송금인/수취인명, 적립서비스명
30	가맹점명	(선택전송) 결제 또는 결제취소 가맹점명
31	상품(구매)제목	(선택전송) 원장에 저장된 구매 내용의 제목 title
32	상품(구매) 분류 (코드)	(선택전송) 해당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분
33	결제방법 (코드)	(선택전송)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등의 구분으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잔액으로 결제하는 경우 원장표기명 (〈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

- 27), 28) 〈거래상대 정보〉 충전: 충전에 사용된 기관+식별키, 송금: 송금 대상 기관+식별키, 송금 수취: 송금인의 기관+식별키, 적립: 적립이 이루어진 기관+식별키, 결제: 결제가 이루어진 상대기관+식별키
  - ※ 카드번호일 경우는 카드업권 마스킹 규칙 준용
- 28) 거래상대 식별키: 해당 결제수단이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 바. 전자결제정보

- (적용업권\*)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및 이와 유사한 결제성 정보 보유자
  -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고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	가입일	전송요구권이 적용되는 고객 정보의 최초 생성일 ex. 회원가입일, CI최초수집일 등
2	계정ID 노출용 List	고객이 정보제공자의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 설정한 ID List, 고객이 식별/인지가 가능한 값. 단, 마스킹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ID별 구분 불가한 것은 용인
3	계정ID Data 호출용 List	데이터 호출 Key의 용도로 정보제공자가 설정한 ID List
4	거래메모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가 보유한 계정의 거래내역 중 거래메모 전송요구 여부
5	상품(구매) 분류 전송요구여부	정보주체의 결제내역 중 상품(구매) 구분 (코드)의 전송요구 여부
6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계정의 결제내역 중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7	결제수단 등록 여부	이후 결제의 편의성을 위하여, 고객이 정보제공자의 서비스에 직접 등록해 놓은 결제수단의 존재 여부

- 가입일: CI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키 수집 이전의 금융정보는 전송요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식별키 수집일자가 회원가입일보다 이후일 경우, 개인식별키 수집일자 전송
- 2) 계정ID 노출용 [List]: 등록된 계정ID가 없을 경우,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등 고객이 인식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전송(마스킹 가능, 마스킹 정책은 각 정보제공자의 정책에 따름)
- 7) 결제수단 등록 여부: 제공자 서비스 내에 결제수단 등록 기능이 없을 경우 'N' 회신

## ○ 결제수단 등록정보 중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계정ID Data 호출용\*
- \* 3) 계정ID Data 호출용 [List]에 포함된 값

번호	항목	정의
8	결제수단 기관 (코드)	(선택전송) 고객이 등록한 결제수단을 발행(제공)하는 기관의 코드 (예: 연결된 계좌를 발행한 은행의 기관코드 등)
9	결제수단 식별키	(선택전송) 해당 결제 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값 (계좌번호, 카드 번호(마스킹) 등)
10	Primary 여부	(선택전송) 해당 결제 수단의 primary 지정 여부

- 9) 결제수단 식별키: 해당 결제수단이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 10) Primary 여부: 정보제공자의 서비스 상에 고객이 주 결제수단을 특정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에만 전송

## 거래내역 - 결제내역☞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정ID Data 호출용

번호	항목	정의
11	결제유형	해당 결제정보의 구분 코드 (전금업 거래유형 중 결제정보)
12	주문번호	해당 결제내역의 주문번호
13	결제일시	결제 또는 결제취소 일시
14	결제번호	(선택전송) 결제일시 데이터가 년월일까지만 전송되어 결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일자의 거래 순서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설정한 순번
15	통화코드	(선택전송)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의 통화 코드. KRW일 경우에는 미전송
16	결제금액	결제 또는 결제취소 총 금액
17	결제수단 기관 (코드)	(선택전송) 결제에 사용된 결제수단을 발행한 기관 코드
18	결제수단 식별키	(선택전송) 결제에 사용된 결제수단의 식별 값 1. 카드: 카드번호(마스킹포함), 2. 은행: 계좌번호, 3. 선불(머니): 선불지급수단명, 4. 무통장: "무통장", 5. 기타: "기타"

번호	항목	정의
19	할부개월	(선택전송) 할부개월 수
20	가맹점명	(선택전송) 결제 또는 결제취소 가맹점명
21	거래메모	(선택전송) 해당 거래의 부가 정보 (ex. 상품권명, 포인트명, 기타, 송금인/수취인명, 적립 서비스명)
22	상품(구매)제목	원장에 저장된 구매 내용의 제목 title
23	상품(구매) 분류 (코드)(※)	(선택전송) 해당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분
24	결제방법 (코드)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등의 구분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으로 결제하는 경우 원장표기명 <b>〈〈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b>

- 18) 결제수단 식별키: 해당 결제수단이 정보주체 본인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송하며,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미전송
- ※ 주문내역정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내역정보를 아래의 1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가공정보 수준에서 개방 (상세내용은 [부록 1] 코드표 참고)

\* 예 : 책상용 의자 구매 → 생활/가구, 신발 구매 → 패션/의류

구분	카테고리 포함 품목 예시
가전/전자	가전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포함)
도서/문구	서적, 사무 문구
패션/의류	의복, 신발, 가방, 패션용품 및 악세서리
스포츠	스포츠 용품
화장품	화장품
아동/유아	아동/유아용품
식품	음식료, 농축수산물
생활/가구	생활용품(꽃 포함), 자동차용품, 가구, 애완용품
여행/교통	여행 용품, 교통 관련 결제
문화/레저	영화표 등
음식	음식 배달
e쿠폰/기타서비스	기프티콘, 상품권 등
기타	기타

## 사. 개인형IRP 정보

#### ○ (적용업권\*) 은행, 보험, 금투 등

\* 기관별 보유 정보 항목과 표준화 및 구조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개인형IRP 정보 - 목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	상품명	해당 IRP 상품의 명칭
2	계좌번호	해당 고객이 보유한 개인형 IRP 계좌번호

#### ○ 개인형IRP 정보 - 기본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3	계좌잔액	IRP 계좌의 잔액 (각 사 정책에 따라 전송하되, 앱 또는 웹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치와 같은 값)
4	계좌평가금액	조회 시점 전일자 기준의 이자 등 운용수익이 반영된 평가금액 (계좌전체 기준, 수수료 관련 이슈는 각 사 정책에 따름)
5	사용자부담금	적립금액 중 사용자 부담금
6	가입자부담금	적립금액 중 가입자 부담금
7	개설일	계좌 개설일 (통장이 만들어진 날짜)
8	최초 입금일	(선택전송) 연금계좌 가입일 ※ 연금계좌가입일: DC 최초 부담금 납입일(①)과 개인형IRP 최초 부담금납입일(②) 중 빠른 날짜
9	최초 제도 가입일	(선택전송) DB 제도에서 퇴직금이 입금되었을 때, DB 제도의 가입일
10	연금개시 시작(예정)일	(선택전송) 고객이 연금개시가 되도록 지정한 날짜(예정) 또는 연금 개시가 시작된 날짜

## ○ 개인형IRP 정보 - 거래내역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11	거래일시	해당 거래의 발생 일시
12	거래번호	(선택전송) 해당 일자의 거래 특정 번호
13	거래구분 (코드)	해당 거래의 거래 유형 <b>〈〈 입금, 지급 〉〉</b>
14	거래금액	해당 거래의 금액

12) 거래번호: 11) 항목이 거래일자로 전송될 경우, 해당 일자 내 거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가 임의로 설정한 값

#### ○ 개인형IRP 정보 – 개별운용상품 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좌번호

번호	항목	정의
15	개별운용상품명	금융회사의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개별운용상품의 명칭
16	상품유형 (코드)	개별운용상품의 상품 유형 < 원리금 보장, 원리금 비보장, 기타 >>
17	평가금액	기준일자의 이자 등 운용수익이 반영된 평가금액 (개별운용상품 기준, 수수료 관련 이슈는 각 사 정책에 따름.)
18	납입(투자)원금	납입원본 또는 납입후 이자 재예치후 원금 (개별운용상품 기준 잔액 표기 = 고객이 납입한 총 원금 – 지급 원금)
19	보유좌수	(선택전송) 개별운용상품이 보유한 좌수(원리금 보장(예금) 상품일 경우에는 전송하지 않음)
20	신규일	(선택전송) 개별상품 신규일(재예치일)
21	만기일	(선택전송) 개별상품 만기일
22	약정이자율	(선택전송) 해당 개별운용상품이 원리금 보장(예금) 상품일 경우의 이자율

- 18) 납입(투자)원금: 정보주체에게 '수익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항목으로, 단순하게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수익률에 대한 계산 가능 『수익률(%) = 평가금액/납입(투자)원금 - 1』
- 19)~22) 운용상품정보: 정보제공자가 개별운용상품 단위로 해당 정보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전송 하지 않음. ex) 단일 개별운용상품에 다수의 계좌상품이 포함되어 해당 정보들이 각기 관리되는 경우

## 아. 통신업 정보

#### Note

- 통신업권의 전송요구권 행사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
  - 통신료 정보에서는 실사용자와 납부자의 구분이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어려움

#### ○ 고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	계약관리번호	정보제공자가 부여한 계약의 고유 식별자
2	가입번호	휴대폰번호 / 고객번호 등 고객이 가입한 상품을 식별 가능한 유일 값
3	통신구분	해당 상품의 통신 구분 <b>〈〈 휴대폰 / 집전화 / 인터넷 〉〉</b>
4	가입구분	가입 상태 구분 <b>〈〈 정상 / 고객정지 / 연체정지 / 기타(스패머 등) 〉〉</b>
5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고객의 결제정보 중 가맹점명 전송요구여부

#### 청구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 전송단위: 계약관리번호, 청구연월

번호	항목	정의
6	청구년월	청구정보 호출을 위한 청구정보의 대상연월
7	청구금액	고객에게 특정 청구대상연월에 청구한 금액
8	납부예정일자	청구서 상 고객에게 납부를 요청한 일자

## ○ 납부정보 ☞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약관리번호

번호	항목	정의	
9	납부연월	해당 납부정보의 대상연월	
10	납부금액	고객이 실제 납부한 금액	
11	납부수단	고객이 요금을 납부한 수단 <b>〈〈 자동납부, 지로, 기타 〉〉</b>	

11) 납부수단: 자동납부(카드, 자동이체 등), 지로(지로를 통해 은행에 납부), 기타(대리점 납부 등)

#### 결제정보 - 소액결제 이용내역☞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계약관리번호

번호	항목	정의
12	이용일시	소액결제를 이용한 일시
13	가맹점명	(선택전송) 소액결제를 이용한 가맹점명(ex. PG사명)
14	결제금액	해당 소액결제의 이용 금액
15	결제상품명	(선택전송) 소액결제 상세(ex. xx외 몇건)

## 자. 보증보험 정보

#### Note

•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보증보험 상품은 데이터의 구조가 일반 보험상품과 상이하여 데이터 표준화 및 구조화를 개별 진행함.

#### ○ 고객정보 ☞ 정기전송 ① 기본정보

■ 전송단위: 정보주체(CI)

번호	항목	정의
1	증권번호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증권번호
2	상품명	보험 상품의 공식 명칭
3	보험종류 구분 (코드)	해당 계약의 보험종류 구분
4	계약상태 (코드)	현재 주계약의 계약상태 <b>〈〈 정상(계약유지), 해지 〉〉</b>

3) 보험종류 구분 (코드): 보증보험정보의 보험종류 구분 (코드)는 '20) 보증(신용)보험'으로 고정

#### 보증보험정보 - 기본정보□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증권번호

번호	항목	정의	
5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6	종료일자	보증보험계약의 종료일자	
7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8	피보험자수	해당 보험 계약에 포함된 피보험자의 수	
9	피보험자명	해당 보험 상품의 피보험자 이름	
10	납입기간구분 (코드)	납입 만기 기간 구분 <b>〈〈 일시납, 분납 〉〉</b>	
11	총 납입 보험료	해당 상품에 납입해야하는 총 보험료 납입액	

## 보증보험정보 – 보험료 납입내역☞ 정기전송 ② 추가정보

- 전송단위: 증권번호

번호	항목	정의	
12	납입일자	해당 납입 내역의 납입일자	
13	납입회차	해당 납입 내역의 납입 회차	
14	실납입 보험료	고객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	
15	수금방법 (코드)	고객의 보험료 납입 방법 유형 《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지불, 지점출수납, 기타 》》	

## 차. 공공정보 중기전송 미정

○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진행에 따라, 아래 증명서 항목의 행정정보 및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협의 중 (세부 항목 추후 안내)

구분	증명서 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나네 지크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 관련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그비교대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 관련	납세사실증명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기가나한 고점여그 제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공적연금 관련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3.4.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 (전송요구의 내용) 고객은 다음 사항을 특정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음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 요구시)

전송 요구 사항	비고
정보제공자 (전송 요구를 받는 자)	• 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정보의 항목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보수신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요구 / 미요구 • 주기(주1회)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최대 1년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 종료시 또는 삭제요구시까지

#### ○ (전송요구의 방법) 고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수단으로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을 요구

- 서면
-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 (보안·비밀 계좌 정보 전송) 보안 계좌. 비밀 계좌 등과 같이 고객이 정보제공자에 비대면 정보 조회 금지를 요청한 정보(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시용정보 전송요구 대상에서 제외됨. 단.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등을 이용하여 대면으로 해당 정보에 대해 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기를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고객의 보안계좌 특약 해지 확인 후 이를 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 대면 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각사 지침에 따라 보안계좌. 비밀계좌 전송요구 수행
- (전송요구의 철회) 고객은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방법은 전송요구의 방법과 같음
- (정기전송) 고객은 정보제공자에게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전송요구의 중단) 정보제공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음

## 전송요구 거절, 정지·중단 사유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거절시 고객 통지) 전송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자가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 3.5. 정보전송 방법 및 절차

## 가. 마이데이터전송절차

○ 마이데이터전송절차는 금융보안원 발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을 따름

## 나. 일반전송절차

정보제공자가 ① 고객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절차와 ② 기관(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절차를 구분

#### ① 고객이 정보수신자인 경우: PDS에 정보 전송

- 고객이 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PDS에 정보를 전송하고, 고객은 PDS를 통하여 정보를 수신하고 정보를 관리(PDS = 고객)
- (운영방안)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유한 모든 기관이 PDS 개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신용정보원(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전송요구앱 및 PDS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 워킹그룹 대상 '전송요구권 운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20.12.22)' 결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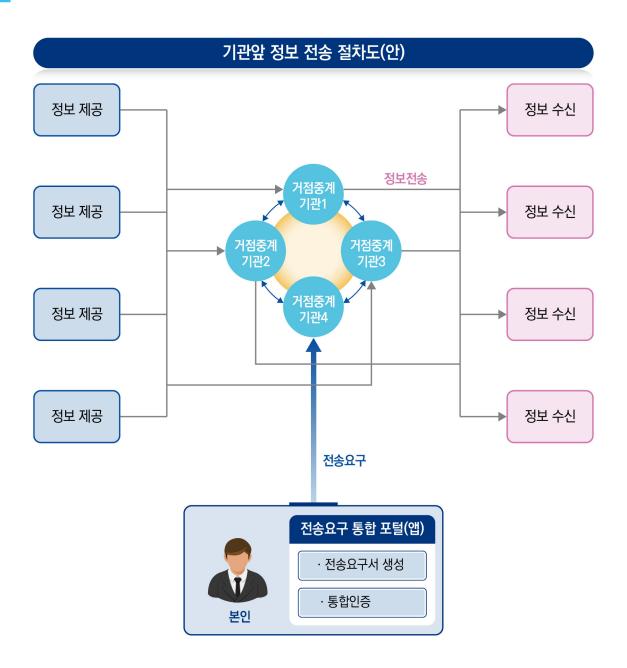
#### 〈일반적 전자우편서비스와 차이점〉

	일반적 전자우편	PDS
보안 수준	전자우편에 접근하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	PDS에 접근시 본인인증 절차 사용될 예정
타인 전송 가능성 가지는 자	고객이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본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제시하는 경우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로 개인신용정보가 전송될 수 있음	본인인증된 PDS에 정보가 전송되므로 타인에게 전송될 가능성은 없음 (접근매체 탈취 등 불법적 접근은 제외)

#### PDS(Personal Data Storage, Store, Space) 개요

- PDS란 정보주체가 본인의 ①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②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실있게 보장
  - ① (저장) 흩어진 본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안전한 저장소(DB)에 저장
  - ② (관리) 통합하여 저장한 데이터를 전송요구·제3자 제공·삭제 등 정보주체의 의지에 따라 관리·활용
- 최근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의 조화를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PDS 도입·활용 검토가 활발\*
  - \* PDS는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용
  - PDS는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을 넘어서 정보 주체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자기 결정권 강화)의 맥락에서 중요성이 증대
- 국가별로 금융 산업 환경. 법제 기반 등 특수성에 따라 PDS 등 도입 수준. 구축·운영 방식 등이 상이
  - PDS와 유사한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으로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DA(Personal Data Account), PCB(Personal Cloud Butler) 등 유사시스템이 운영 중

- ② 기관이 정보수신자인 경우: 업권별 거점중계기관\*을 경유하여 기관으로 정보를 전송 하는 방식
  - \* 신용정보원,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각각 업권을 나누어 고객의 전송요구와 이에 따른 정보전송을 중계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점중계기관이 고객의 전송 요구를 정보제공자로 전달하고,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수신자로 정보전송을 중계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4.1.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84

**4.2.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85

PART.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 4.1.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 (개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라 마이데이터산업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행

####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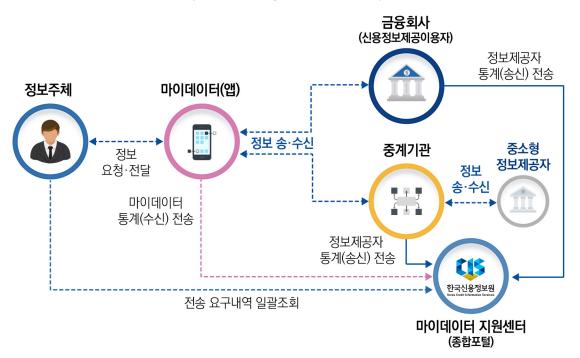
- 신용정보법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시행령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종합산용정보집중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 5.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
  -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4.2.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 가. 참여기관 관리

- (역할) 마이데이터산업을 구성하는 고객<sup>①</sup>, 마이데이터사업자<sup>②</sup>, 정보제공자<sup>③</sup>, 중계 기관<sup>4</sup>, 인증기관<sup>5</sup>의 등록 및 데이터 송·수신자 인증을 포함한 참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관리
  - 지원센터 내 참여주체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마이데이터산업 초기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 나. 정보항목 선정 및 표준화

- (역할) 워킹그룹에서 선정한 전송대상 신용정보항목 이외에 마이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 관리되어야 할 항목을 지속적으로 반영
- (의견수렴) 정기적 의견 취합기간(추후 공고)을 통해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업권별 정보제공자TF에서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 각 금융업권별 담당 협회(아래)를 중심으로 정보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기술 규격(금융보안원) 관련사항을 포함함
    - ① 은행: 은행연합회
    - ②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 ③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 ④ 카드. 할부금융: 여신금융협회
    - ⑤ 금융투자: 금융투자협회
    - ⑥ 전자금융: 핀테크산업협회
    - ⑦ 통신: 한국정보통신협회
    - ⑧ 그 외: 마이데이터지원센터(신용정보원)

#### 다. 과금체계 운영방안 관리

○ (역할)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기적 정보수신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적정한 괴금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괴금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과금 모델)** 마이데이터산업통계가 충분히 수집되었을 때 전문기관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최적 과금모델 개발
- **(과금 정산)** 과금 적용 전 참여기관 간 수수료 정산방법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적정 방안 검토
  -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circ}$ , 중계기관과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circ}$ , 중계 기관과 중·소형 정보제공자 간<sup>3</sup> 과금 정산 이슈
- (과금 주기) 마이데이터산업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간·월간·일일 정산 방안에 대해 검토
- (회의체 논의) 수수료 관련 참여기관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회의체 구성·운영 고려
- (기타) 수수료 미납 처리·해결방안 등 이슈발생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검토

#### 라. 민원·분쟁사항 관리

- (역할) 고객 민원 및 참여기관 간 분쟁발생 관련 의견을 접수하여 금융당국과 함께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채널 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포털 내 1:1문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 및 참여기관이 가지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궁금증 해소
  - **(오프라인 채널 관리)**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정기 협의체의 안건으로 각종 분쟁 사항에 대한 공유·논의를 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감한 이슈사항은 금융당국에 제안하여 신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마. 정기협의체 운영

○ (역할)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에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참여기관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정기 회의체를 구성·운영

	<ul><li>● 마데사업자 TF (지원센터 운영)</li><li>- 정보수집, 산업준비 관련 이슈 등</li></ul>
① 마이데이터TF	② 정보제공자 TF (협회중심 운영, 지원센터 참여) - 정보항목, 표준화, 기타 등
	❸ 마이데이터 TF (지원센터 운영) - 마데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가 함께 논의
② 마이데이터자문단	마이데이터TF 핵심이슈 리뷰 및 자문 마이데이터 산업관련 중요이슈 자문

#### 1 마이데이터TF

- 마이데이터 산업 이해관계자 및 주제별 TF를 개별 구성하여 운영
- 마데사업자 TF (※지원센터 운영)
  - (참여기관 구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득기관 및 예비허가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
  - (주요 논의사항) 마이데이터 준비관련 서비스&기술 이슈사항 및 정보항목 표준화 추가사항 검토 등

- ② 정보제공자 TF (※ 협회중심 운영, 지원센터/금보원 참여)
  - (참여기관 구성) 업권별 대표협회\* 주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업권의 중요 이슈를 발굴
    -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 협회, 대부금융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 (주요 논의사항) 정보전송 애로사항, 컴플라이언스, 전송항목 추가·변경 및 표준화 이슈 등
- 3 마이데이터 TF (※ 지원센터 운영)
  - **(참여기관 구성)** TF에 참여할 업권별 대표 이해관계자<sup>\*</sup>를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중계기관\*\*,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
    - \* 업권별 대표협회를 중심으로 지정
    - \*\* 4대 중계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신용정보원(마이데이터지원센터), 금융보안원, 금융감독원(필요 시)
  - (주요 논의사항) 정기 의견조회 결과 및 마데사업자TF❶. 정보제공자TF❷에서 발굴된 핵심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내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

#### ② 마이데이터 자문단

- 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권리 보장, 산업의 조기정착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청취
  - **(인원구성)** 마이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법조계·소비자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
  - **(주요 논의사항)** 과도한 정보전송 제한 행위규칙,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가입제한방안, 스크레이핑 허용범위 및 수준 등

#### ③ 중계기관 회의체

- 중계기관 이슈 발생 시 회의체 운영

#### 4 과금 회의체

- API에 의한 정보전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2.1월 이후 일정기간의 데이터 수집후 운영 예정

#### 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역할) 지원센터에서 참여기관 및 대국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운영 (상세내용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자료실 게시판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 로드 받아 참조)

#### (주요 기능 구성)

- (참여기관\* 등록·관리) 마이데이터산업을 구성하는 참여기관이 종합포털에 가입을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등록・관리하는 등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전 필수 절차
- \*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인증기관 등
- (자격증명 발급·관리)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 참여기관의 자격증명 (Client ID/Secret)을 발급하고 관리
- (지원서비스 전용 접근토큰 발급·관리) 종합포털의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포털과 참여기관 간의 접근토큰을 발급하고 관리
- (실환경 테스트 담당자 조회) 참여기관이 실환경 테스트 담당자를 등록·관리하고 타 기관의 담당자를 조회하는 서비스 제공
- (통계정보 제공)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가 종합포털에 집중하는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정기적 전송에 대한 과금모델 개발 및 각종 산업통계ㆍ지표 등을 제공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내역 통합조회)** 고객이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마이데이터서비스에서 요구한 개인시용정보 전송 요구내역을 일괄 통합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정보제공자 서비스 상태 조회)**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종합포털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API 전송시스템 상태(정상, 시스템점검, 장애 여부 등) 조회 가능
- **(마이데이터 소개 및 고객지원 서비스)** 마이데이터 생태계 및 참여기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소식 안내 및 각종 민원, 문의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지원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Q&A

5.1.	마이데이터산업 Q&A	94
------	-------------	----

**5.2. 전송요구권 Q&A** 108

**5.3. 기타 Q&A** 119

PART.
05

**Q&A** 

## 5.1. 마이데이터산업 Q&A

## 가. 정보수집 · 저장



#### 궁금해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스크린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계속 01 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02

현재 핀테크업체가 개발한 스크린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수집 중으로, 정보가 해당 핀테크업체를 경유하여 당사로 집적되는 구조인데 이런 방식의 영업이 가능한가요?

신용정보법(제22조의9)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경유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의 제5항)

03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반드시 전송요구권에 근거하여,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서만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제3자 제공 동의 또는 오픈뱅킹 API를 통한 수집은 불가능한가요?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정보주체로부터 위탁받아 수집하는 방식(스크린스크 래핑 등)은 금지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신용정보주체로부터의 개별 정보제공동의, 오픈뱅킹 API활용 등

04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허가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수집 당시 동의를 받은 수집 목적에 마이데이터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제공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해당 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단순히 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주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본허가에 대한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3자 제공(1차) 이후 제3자가 다른 기관으로의 재제공(2차)은 불가합니다



0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고객의 전송요구 권을 기반으로 타기관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가요?

신용정보법제33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신용정보를 전송 요구에 따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용 하거나 제공·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이용 또는 제공·활용이 신용정보의 처리 측면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처리" 행위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예 : 통합조회)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7

고객의 요청하에 전송받은 타사데이터의 보관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전송요구를 통하여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은 해당 전송요구서에서 정한 개인 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따르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 나. 마이데이터서비스



#### 궁금해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통합 조회 서비스 제공이 08 불가능한가요?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 채널에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공 하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타 금융그룹과의 제휴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사 또는 소속 금융그룹 계열사 09 금융상품만 추천하는 방식의 영업도 허용되는 것인가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금지 등(시행령 제18조의6 제①항)

010

기존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유의 서비스 채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본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비스 채널이 있으면 고유의 채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존 업무와 관련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어플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011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4시간 제공 되나요?

24시간 365일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보전송 요구를 철회 혹은 정정 하려는데 앱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전송 요구 012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이데이터사업자로의 전송요구내역을 통합조회 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고, 정보전송 요구의 철회 또는 정정은 마이데이터 앱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 정기적 정보전송에 대하여 과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013

마이데이터 산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격적인 산업 시행 이후 1년 이내 의 무과금 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014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얻은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콜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마케팅 목적(예:콜마케팅 등 out-bound 영업행위)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동의"는 고객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원하는 용도 외에 "마케팅"용도로 활용 된다는 점, "마케팅" 용도의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시적으로 받은" 것은 온라인 방식 등을 포함하여, 고객이 마케팅 용도 활용에 동의 한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마케팅 목적 사용에 동의한 고객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후 에는 기업은 마케팅 용도 활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015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으로 인해 새롭게 제시된 정보전송절차를 위해 기존 유사 서비스 가입자가 가입 및 동의 절차를 다시 해야하나요?

새롭게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보안과 안전성이 강화된 시스템에 근거하여 원활한 정보전송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016

오픈뱅킹, 어카운트인포 등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21.7.29)

오픈뱅킹, 어카운트인포와 같이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의3제2호 참고)



### 다. 업무범위



### 궁금해요?

마이데이터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마케팅 목적 017 으로 활용 가능한가요?

마케팅 목적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겸영업무를 이미 영위하고 있는 비 Q18 금융사는 허가와 별도로 겸영업무 영위를 신고해야 하나요?

허가 시 사업계획에 포함된 겸영업무는 허가 신청서를 통해 겸영업무 영위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019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및 부수업무는 열거주의인지, 아니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거된 겸영부수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신용정보법 및 하위규정에 제시된 업무에 제한(열거 주의) 됩니다.



020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겸영ㆍ 부수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외에 개별 업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신용정보법이 허용하다. 라도 개별 업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업무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업법에서 허가 또는 등록을 거쳐 영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업무는 본인신용 정보관리업 허가 외에 해당업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을 받을 경우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에 포함된 겸영업무 중 타 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한 업무는 지체 없이 허가 등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021

본업의 데이터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수집한 고객 데이터의 결합/분석 활용이 가능한가요? ('21.7.29)

고객 데이터의 결합, 분석 및 활용은 그 목적, 결합 대상 정보, 결합 및 분석의 수준 등 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률적으로 가능・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 며 Case by Case로 가능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022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전송요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제3자정보제공이 가능 한가요? ('21.7.29)

수집한 정보의 제재공을 하려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다른 법령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은행의 경우 은행법, 카드사의 경우 여전법 등)에는 그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23

플랫폼(배달대행, 오픈마켓)에 등록된 가맹점 상품정보를 가맹점을 대신하여 통합관리하는 서비스를 구상 중입니다. 동 서비스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해당 하나요? ('21.7.29)

가맹점의 상품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라.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 궁금해요?

Q24 허가의 유지요건 및 정기적 평가·감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1.7.29)

신용정보법은 물적 설비 유지를 허가 유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 14조의 허가취소 사유 발생시에는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업무는 상시 감독 및 검사 대상입니다.

(물적요건 변경 관련 금감원 신고대상 여부 판단) 표준 API 개발 리뉴얼 작업시 어가 과정 중 보고한 아키텍처와의 차이가 발생, 금감원 보고대상인지 판단 필요(Legacy에서 Cloud 영역 변경) ('21.7.29)

허가시 제출한 물적설비현황은 허가 유지 요건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설비가 허가시 갖춘 설비의 수준을 지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물적설비의 수준을 지속 유지하는 한 전산 장비의 일부 교체 등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나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시스템에서 상용 클라우드(Cloud)로의 변경 등 시스템 구성의 전반적인 변경은 신용정보법시행령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 등에 따른 허가 변경사항 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설비를 상용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법 17조에 따른 신용정보 처리 위수탁에도 해당될 수 있고. 이에 해당할 경우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보고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수탁자가 클라우드 사업자(CSP)인 경우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 14조의 2 관련 클라우드 이용 규정을 일부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허가 매뉴얼' 참고

026

가이드라인 상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는 문구가 존재하며 이는 현재 영위중인 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내 제출한 준비중인 사업의 경우도 신고한 것으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21.7.29)

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는 비금융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겸영부수업무는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경우 별도이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일 당시 이미 영위하고 있던 업무(기존 영위 업무)가 아니면 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겸영 및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027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회사이나,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에서 망분리 규정을 전자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아니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내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보호조치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은 없나요? ('21.7.29)

망분리 요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허가 물적 설비요건에 해당되고, 동 요건(보안체계 9번 항목)은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요건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 중계기관



### 궁금해요?

**Q28** 전송요구권 관련 업권별로 지정된 중계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나요?

전송요구권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업권별 지정\*된 중계기관(거점중계기관 포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계기관별 주로 담당하는 업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통해 기준을 선정

주요 업권 별 정보제공자 전체 현황과 중계기관 이용현황이 궁금합니다. 029

종합포털 오픈 후, 기관정보 조회(지원API-002)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30

중계기관에서 전송요구권 행사 개인신용정보를 저장한 후 마이데이터사업자 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정보제공자도 원장 정보 외 별도 이력관리가 필요한가요? (모든 로그를 관리해야 하는지, 인증정보는 제외하고 데이터 전송 정보만 저장 관리하면 되는지 여부) ('21.7.29)

신용정보원의 경우, 중계기관으로서 전송정보를 저장할 예정이며, (0200/802, 접근 토큰 및 전송요구내역 조회) 전문을 통해 참여기관이 해당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또한 구축할 예정입니다.



참여회사는 금융회사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각종 보안 사항과 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계플랫폼과의 전송정보를 저장, 관리해야 하는 수준은 위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 누락 등의 사유로 발생 가능한 민원 대응을 위해 정보 저장 및 관리를 권장합니다.

# 5.2. 전송요구권 Q&A

### 가. 개인신용정보 전송



### 궁금해요?

O31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았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해야 하나요?

신용정보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의 정보에 대해 정보수신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일 경우에는 API 방식을 이용하여 전송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Q32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송요구 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에 열거된 개인신용정보 항목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3.3 대상정보' 참고 바랍니다)

033

전송요구권 행사시 전송의무가 있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나요?

정보주체의 요청 시 조회시점으로부터 5년까지의 데이터는 즉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034

트래픽 과다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신용정보법 시행령(제28조의3제5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035

전송요구권에 의하여 정보를 전송받은 정보수신자는 전송받은 신용정보 내역에 관한 기록을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하나요?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8조의6 10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통지의무가 있으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아닌 정보수신자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Q36 전송요구 종료시점 전 연장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 전송요구 종료 전 고객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 요구 시점부터 연장 처리를 하면 됩니다.



Q37 CI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나요? ('21.7.29)

CI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보유하지 않아서, 해당 정보의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본인확인을 위하여 CI를 수집하나, 저장 및 보관을 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정보제공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전송요구를 위한 CI를 수집하여 전송요구를 준비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보관한 경우에는 CI 일괄변환을 통해 전송요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38 마이데이터사업자도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어떤 정보항목이 해당되는지, 표준안이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1.7.29)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송요구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전송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나. 전송요구 운영 플랫폼



### 궁금해요?

039

전송요구앱을 통한 요청으로 고객에게 또는 다른 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할 때에도 API를 이용해야 하나요? ('21.7.29)

마이데이터와 동일하게 API 방식을 이용하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융보안원에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표준API규격'을 참고바랍니다.



040

본인 앞 및 기관 앞 전송 시, 정보제공자가 개별 및 통합 인증을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21.7.29)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준비 중인 전송요구권앱을 통해 "본인 앞 전송", "기관 앞 전송" 이 운영될 예정으로, 전송요구권 운영플랫폼 내에서는 금융보안원이 배포한 "개인신 용정보 전송요구권 표준 API 규격"에 따라 통합인증만 사용됩니다.



전송요구앱에서 정보주체가 통합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를 전달받은 정보제공자는 해당 전자서명 검증 및 인증기관을 통해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등 "마이데이터 앞 전송"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Q41

본인앞전송, 기관앞전송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직접 구축을 준비하는 기관도 거점중계기관과 연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PDS 분담금 이외 업권별 거점중계기관에서 요청하는 별도 분담금이 있나요? ('21.7.29)

안전한 전송요구권 운영관련 최소한의 비용으로 본인 앞 및 기관 앞 전송 연계 구축을 위해 PDS 구축 및 거점중계기관을 준비 중입니다. 해당 거점기관별로 공동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분담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 전송정보 항목관련



### 궁금해요?

### ① 은행

대출상품의 범위가 '대출상품', '신용공여'를 모두 포괄하는 것 인가요? 042 (ex. 가계지급보증)

전송요구권에 의한 전송 정보에 보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공여 중 명확한 '대출'에 대한 정보만 전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 보험

외화납입 보험의 금액에 대한 API 분류 방법이 궁금합니다 043

보험 납입 정보 - API 납입 금액에 대한 '통화코드' 필드가 있습니다. 해당 외화의 통화 코드를 사용하여 전송 가능합니다.



Q44

###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이 정상 유지되는 상태의 정보 전송은 어떻게 되나요?

종신보험 만기 후 연금보험으로 전환되는 형태 등, 기존의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주계약의 상태를 해지가 아닌 '06') 소멸'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를 전송합니다.



Q44

### 보험료 분할 납입 건에 대한 정보 전송은 어떻게 되나요?

- 1. 특정 월 보험료 분할납입의 경우 납입 건별로 데이터를 전송하되 납입 연월은 동일 데이터 전송(해당 월) 합니다.
- 2. 보험료 선납의 경우 납입은 1건이나 해당 건을 해당월 납입 분과 선납 분으로 나누어 2건으로 전송합니다. 즉, 납입일자는 같으나 납입연월과 실납입 보험료가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③ 카드

Q46

카드식별자만으로 키 값 사용이 가능한가요?

카드식별자만으로 키 값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047 카드식별자의 부여기준이 있나요?

카드식별자는 표준 API 규격(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데이터 보유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Primary Key입니다. 카드업권의 경우 카드번호가 마스킹 처리되어 Primary Key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식별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설계서상 정상카드만 회신한다고 되어있는데, 정상카드의 정확한 의미(분실,정지된 카드도 포함인지 등)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청구정보조회 048 에서는 정지카드도 포함되나요?

'정상'의 정확한 의미는 '해지되지 않은' 입니다. 분실, 정지, 사고 등의 상태인 카드도 전송 대상이 맞습니다.



#### 카드식별자는 카드번호가 유추되지 않는 값인가요? 049

카드-002, 카드-007, 카드-008 등 카드식별자를 PrimaryKey로 사용하는 API들의 경우 {card id}가 URI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노출이 되어도 무방한 값이어야 하므로 카드식별자로 카드번호 유추가 불가해야 합니다.

**O50** 

카드 이용내역 별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 등 국세청 제출용 사용 구분 코드 추가 요청이 가능한가요? ('21.7.29)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시작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전송항목에 대한 검토는 가능한 산업 시행 이후 고려 예정입니다.



### ④ 금융투자

O51

개별운용상품의 평가금액 기준일자는 언제인가요?

모든 데이터의 기준일자는 '조회시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운용상품 평가금액의 기준일자는 '조회 시점 당시 가장 최근에 평가된 금액'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⑤ 전자금융

**Q52** 

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를 이용한 복합결제 의 경우 정보 전송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합결제(총10,000원=카드5,000원+계좌이체3,000원+선불전자지급수단2,000원)가 진행되었을 경우, 3건의 개별 결제로 간주하여 정보를 전송하되, 결제금액과 결제수단 기관(코드), 결제수단 식별키를 제외한 데이터들은 동일 값을 전송합니다.



O53

선불거래내역 유형 추가반영이 가능한가요? (※ATM, 포인트를 활용한 대출, 투자 등 사용내역 유형 등) ('21.7.29)

현재는 기존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업권의 공통된 의견으로 요청 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O54** 

전자결제정보의 경우 은행/카드업 등 타 업권 정보와 중복 발생이 많은 항목으로 맵핑할 수 있는 키 반영이 가능한가요? ('21.7.29)

PG를 통해 이루어진 금융거래에 대하여 타 업권이 보유한 금융거래 내역과 매핑을 고려하진 않고 있습니다.



O55

PG업의 경우 정보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값이 한정되어 있고, 이 또한 불완전한 정보들입니다. 어떻게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 습니다. ('21.7.29)

기존 전자금융업권 정보제공항목은 ①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와 ②전자결제정보로 분리 반영하였습니다.





② 전자결제정보: PG 또는 그와 유사한 전자결제를 통해 생성된 개인신용정보를 '계정' 단위로 전송

**Q56** 

PG를 통한 결제 수단의 주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나요?

PG의 정보 중 결제수단의 보유자가 본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제 행위의 주체(ex. 계정ID의 주체)가 전송요구 가능합니다.



### **⑥ 기타**

Q57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결제내역의 경우 정보제공 대상인가요? ('21.7.29)

제로페이의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신용정보법 상 전송요구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제공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3. 기타 Q&A



### 궁금해요?

058 API 목록 및 전송 요구 단위 최종 확정 일시가 궁금합니다. ('21.7.29)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추가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정적인 산업 시행 준비를 위해 올해 8월말, 2021년 최종 버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정·추가되는 사항은 TF 활동을 통해 2022년 이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O59**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후 확정된 내용에 대한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1.7.29)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논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이 있을 시.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게시, ② TF를 통한 공유, ❸ 협회를 통한 전달 등의 방법으로 공유 예정입니다.



060

### 정보제공자별 통신 상태 정상유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1.7.29)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의 '정보제공자 상태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분야 표준 API 규격 상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정상 상태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API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061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의 보장 관련, 기존에 금융회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21.7.29)

신용정보법(제43조)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발생 하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적립금 내지 보험가입(또는 공제 가입)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보장범위가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정한 손해배상을 포괄 한다면 기존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062

금융 외 분야(유통, 쇼핑, 헬스 등)로의 마이데이터 산업의 확장 계획이 있습 니까? ('21.7.29)

현 신용정보법 상 전송요구의 대상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산업으로의 확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 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별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3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어카운트인포 등 다른 금융 서비스들과의 연계와 관련한 계획은 없나요? ('21.7.29)

현재 마이데이터 산업과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계 및 연동 등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Q64**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중계기관으로서 제공하나요? (21.7.29)

행정안전부 - 신용정보원(중계기관)을 통한 정보제공을 준비 중입니다.



Q65

마이데이터-오픈뱅킹 간 API 항목 동기화를 검토하나요? ('21.7.29)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은 별개의 서비스이며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 목적이 모두 상이 하여 정보 전송항목 및 규격의 동기화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 부록

부록 1. 코드표

124

**부록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송 표준전송요구서 및 표준동의서** 135

PART.

# 6 부

# 부록 1. 코드표

# 가. 계좌번호별 유형 및 상태 구분 코드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내용 참조

		계좌 유형	구분 코드	상태 구분 코드		
	자유입출식			1001		
수신		예	금	1002	〈〈 활동(사고 포함), 비활동 〉〉	
상품		적	금	1003		
		기	타	1999		
		수익	증권	2001		
투자		신	탁	2002		
무지 상품	ISA		신탁형 ISA	2003	(〈 활동(사고 포함) 〉〉	
00	ISA		일임형 ISA	2004		
		기	타	2999		
	신용대출	신용대출		3100	-	
		학자금대출		3150		
		전세자금대출		3170		
		(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 주식, 채권, 펀드 등			
띠ᄎ						
대출 상품			주택담보대출	3220	(〈 활동(사고 포함) 〉〉	
ОĠ	담보대출	담보대출		외 부동산* 담보대출 * 토지, 상가 등	3230	
		지급5	보증(보증서) 담보대출	3240		
				보금자리론	3245	
			학자금	금(지급보증담보)대출	3250	
			주택연금대출	3260		

		계좌 유형	구분 코드	상태 구분 코드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 보증서, 질권 등	3270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3271	(〈 활동(사고 포함) 〉〉
		기타 담보대출	3290	
		보험계약대출	3400	
대출 상품	할부금융	신차 할부금융	3500	
영품		중고차 할부금융	3510	
		기타 할부금융	3590	
	71.4	금융리스	3700	
	리스	운용리스	3710	
	기타 채권인수전문기관 보유		3999	

# 나. 상환방식 코드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내용 참조

코드	구분
01	만기일시상환
02	원금균등분할상환
03	거치식-원금균등분할상환
0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05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06	만기지정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07	만기지정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08	한도거래
09	기타(직접산정)
10	거치식 만기지정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11	거치식 만기지정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다. 보험관련 코드

### ○ 보험종류 구분(코드)

※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 내용 참조

	\(\text{C1000\text{C1}} \text{C1000\text{C1}} \\\\\\\\\\\\\\\\\\\\\\\\\\\\\\\\\\\
코드	구분
01	종신보험
02	정기보험
03	질병(건강)보험 (Cl 보험 포함)
04	상해보험
05	암보험
06	간병(요양)보험
07	어린이보험
08	치아보험
09	연금저축보험
10	연금보험
11	저축보험(양로보험 포함)
12	교육보험
13	운전자보험
14	여행자보험
15	골프보험
16	실손의료보험
17	자동차보험
18	화재/재물보험
19	배상책임보험
20	보증(신용)보험
21	펫보험
22	종합보장보험
99	기타보험

### ○ 보험 계약상태(코드)

코드	구분	정의
02	정상	보장개시(초회보험료 납입) 및 승낙처리 된 상태
04	실효	계속보험료 연체로 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효력이 상실된 상태
05	만기	보험기간이 경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상태
06	소멸	지급소멸, 만기소멸, 납입면제 등에 따른 소멸 상태  → 단, 납입면제 이후 보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정상(02)상태 등록  → 종신보험의 연금보험 전환 시, 주계약이 해지되면서 특약은 정상인 상태에는  종신보험의 주계약 상태를 소멸로 정의

<sup>※</sup> 보험계약상태 (코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의 내용을 일부 차용하였으며, 추후 필요에 따라 수정, 추가, 삭제 등의 관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자동차보험 구분(코드)

※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 내용 참조

코드	구분
0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02	자동차종합보험
03	자동차자손보험
04	운전자보험
05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자동차 유한보험
06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
07	통합계약
09	개인면허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
11	개인용자동차보험
12	업무용자동차보험
13	영업용자동차보험
18	이륜자동차보험
19	농기계보험
20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21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 라. 금융투자업 정보 관련 코드

### ○ 계좌 종류(코드)

코드	구분	정의	
101	종합매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	
102	위탁	개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회사의 위탁계좌	
103	파생상품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위탁계좌	
104	단기금융상품	만기 1년 이내 금융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	
105	연금	연금 계좌	
106	현물	거래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이 동일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	
107	퇴직연금	개인형 IRP	
108	기타		

### ○ 계좌 상태(코드)\*

\*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9호(증시 주변 자금 현황) 참고

코드	구분	정의
201	정상(활동)	통합이나 폐쇄되지 않고 실제 활동 중인 계좌
202	병학 이렇게 보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통합한 계좌	
203	폐쇄	투자자가 폐쇄요청하거나 계좌의 잔액·잔량이 '0'이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폐쇄한 계좌
204	기타	정상, 통합, 폐쇄 상태가 아닌 계좌

### ○ 거래종류(코드)

코드	구분	정의
301	입금	입금(현금)
302	출금	출금(현금)
303	입고	증권사가 증권예탁원에 증권을 넣는 행위
304	출고	증권사가 증권예탁원에서 증권을 빼는 행위
305	매수	증권을 사는 행위
306	매도	증권을 파는 행위
307	상환	발행주체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행위
308	설정	가입기간을 정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행위에서 본격적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하기 시작하는 행위
309	기타	

### ○ 상품종류(코드) 및 종목코드

구분	상품종류(코드)	종목코드	정의
국내주식	401	ISIN CODE	주식, 리츠, 수익증권, 코넥스, K-OTC, 장외 주식 기타, ETF, ELW, ETN 등
해외주식	402	ISIN CODE	미국, 홍콩, 중국, 해외ETF, 해외DR 등
국내채권	403	ISIN CODE	국채, 지방채, 회사채, 통안채 등
해외채권	404	ISIN CODE	해외국채, 해외금융채, 해외회사채 등
대출채권	405	ISIN CODE	기업금융, PF, CP, 사모사채 등
국내파생결합증권	406	ISIN CODE	ELS, DLS, ELB, DLB 등
해외파생결합증권	407	ISIN CODE	해외ELS, 해외DLS, 해외ELB, 해외DLB 등
국내장내파생상품	408	ISIN CODE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등
해외장내파생상품	409	자체코드	해외 지수선물, 해외 지수옵션 등
기타파생상품	410	자체코드	장외파생, 외부선물사장내파생 등
국내단기금융상품	411	ISIN CODE	CD, CP, 전단채, RP, REPO, 발행어음, 소매채권 등
해외단기금융상품	412	ISIN CODE	해외CD, 해외대고객RP 등

구분	상품종류(코드)	종목코드	정의
국내펀드	413	협회표준*	국내 집합투자증권(MMF, 주식형, 혼합자산형 등)
해외(역내)펀드 414 협회표준*		해외(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채권형 재간접형 등)	
해외(역외)펀드	415	자체코드	해외(역외)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채권형, 재간접형 등)
랩	416	자체코드	주식운용형, 자문운용형, 채권운용형 등
신탁 417 자체코드		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등	
현금과 예금	418	자체코드	MMDA, CMA, 보통예금 등
퇴직연금	419	자체코드	IRP
현물	현물 420 ISIN CODE		금현물 등
기타	421	자체코드	위 제외 기타 모든 상품

<sup>\*</sup> 협회표준 : 금융투자협회 표준코드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유형 코드

### ○ 거래유형(코드)

	코드		
		카드	5101
		계좌이체	5102
	えみ	포인트	5103
	충전	무통장	5104
		상품권	5105
선불금융거래		기타	5109
선물급평기대		카드	5111
		계좌이체	5112
	충전취소	포인트	5113
	중인위소	무통장	5114
		상품권	5115
		기타	5119

구분			코드
	송금	계좌송금	5201
		계정송금	5202
		기타	5209
	송금수취	계좌송금	5221
		계정송금	5222
		기타	5229
	송금반환(취소)	계좌송금	5211
선불금융거래		계정송금	5212
		기타	5219
	적립		5301
	적립취소		5302
	송금수수료		5401
	결제*		5501
	결제취소*		5502
	기타(입금)		5901
	기타(취소)		5902

<sup>\*</sup> 선불금융거래 중 결제 및 결제취소는 선불전자지급사업자가 운영하는 구매서비스(ex. 선불 전자지급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몰 등)에서 고객이 포인트를 소모하여 결제하는 행위를 뜻함.

<sup>\*</sup> 자사 '몰'에서 복합 결제(포인트+포인트 외(신용카드 등))가 가능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API를 통해 권면 내 포인트가 감소한 정보와 전자결제정보API를 통한 결제정보가 모두 전송되어야 함.

# 바. 전자결제정보 거래유형 코드

	구분		코드
결제정보 (선불,PG등)	결제	카드	6101
		계좌이체	6102
		포인트	6103
		무통장	6104
		기타	6109
	결제취소	카드	6201
		계좌이체	6202
		포인트	6203
		무통장	6204
		기타	6209

# ○ 상품(구매) 분류 (코드)

구분	카테고리 포함 내역	코드
가전/전자	가전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포함)	A1
도서/문구	서적, 사무 문구	B1
패션/의류	의복, 신발, 가방, 패션용품 및 악세서리	C1
스포츠	스포츠 용품	D1
화장품	화장품	E1
아동/유아	아동/유아용품	F1
식품	음식료, 농축수산물	G1
생활/가구	생활용품(꽃 포함), 자동차용품, 가구, 애완용품	H1
여행/교통	여행 용품, 교통 관련 결제	l1
문화/레저	영화표 등	J1
음식	음식 배달	K1
e쿠폰/기타서비스	기프티콘, 상품권 등	L1
기타	기타	Z1

# 사. 카드정보 코드

# ○ 카드브랜드 (코드)

브랜드명	코드	Note
VISA	I01	
MASTER	102	
Unionpay(UPI)	103	
AMEX	104	국제브랜드
JCB	105	
Discover	106	
Diners	107	

브랜드명	코드	Note	
L.Global	D01		
BC Global	D02		
S&	D03	상기 국제브랜드사와 제휴하여 국내 카드사가 운영 중인 고유(자체) 브랜드	
URS	D04		
oneway	D05		
K-world	D06		
W	D07		
기타 국내 전용카드	D08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제공 포인트 종류

회사명	포인트 명	제휴/자체 구분표기
롯데카드	UNIT 포인트	자체
비씨카드	TOP	자체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	자체
삼성카드	삼성카드U포인트	자체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자체
우리카드	위비꿀머니	자체
우리카드	모아포인트	자체
하나카드	하나포인트	자체
하나카드	예스포인트	자체
현대카드	H-coin	자체
KB국민카드	포인트리	계열사/제휴/자체 포인트 포함
NH농협카드	NH포인트	자체

<sup>\*</sup> L.POINT의 경우 롯데멤버스가 선불전자금융정보로 제공(추가 '21.6.30.)

### 부록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송 표준전송요구서 및 표준동의서

### 가. 전송요구 방식 별 표준전송요구서 및 표준동의서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단계의 서비스 이용 약관. 서비스 가입 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동의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자율적 판단하여 수령
- 본업인 통합조회 서비스 이외의 겸영 및 부수 업무 제공에 필요한 동의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자율적으로 마련
- 사용자 경험(UX, UI)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전송요구서 및 동의서의 문구를 변경할 수 있음. 단. 문구 변경시에도 내용은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함
  - ※ 통합인증 절차 및 개별인증 절차에 따른 전송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분야 마이 데이터 표준API규격」에 따름

### 1. 통합인증 방식

○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전송요구를 보조·지원함에 따라 고객의 전송요구서 작성을 보조하고 전송요구서를 정보제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이와 같은 역할도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 약관 등 으로 상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을 권장

표준양식	양식 수령자	양식 수령시기	
<b>[통합인증 양식 1번]</b> 표준 전송요구서 (가입상품목록 조회)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사업자 경유)	가입상품 목록 전송 요구시	
<b>[통합인증 양식 2번]</b> 표준 수집·이용 동의서	마이데이터사업자	가입상품 목록 전송 요구시	
<b>[통합인증 양식 3번]</b> 표준 제공 동의서	마이데이터사업자	가입상품 목록 전송 요구시	
1			
<b>[통합인증 양식 4번]</b> 표준 전송요구서 (상세 정보 전송)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사업자 경유)	상세 정보 전송 요구시	
<b>[통합인증 양식 5번]</b> 표준 수집·이용 동의서	마이데이터사업자	상세 정보 전송 요구시	

### ※ 전송요구서와 수집·이용 동의의 통합 UX/UI

○ (통합인증 양식1번과 양식2번, 통합인증 양식4번과 양식5번) 전송요구서와 수집·이용 동의서의 항목은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내용을 고객에게 잘 전달한다면, 두 종류의 문서는 사용자경험(UX/UI)을 통하여 통합 가능. 다만, ① 별도의 의사확인은 필요하며 (〈예시〉전송요구서 하단에 고객에게 수집·이용 의사를 묻고 체크박스 제시하는 방법 등), ② 동의 거부권과 동의 거부시 불이익 고지는 하여야 하며 ③ 보유 및 이용기간은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하여야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단, 모바일 환경 등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글씨의 크기가 9포인트 미만인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정보주체가 화면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④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수집·이용 동의서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함

## 2. 개별인증 방식

○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규격」에 따르면 개별인증 방식의 경우 전송요구는 정보제공자에게 직접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는 필요 없음

표준양식	양식 수령자	양식 수령시기
<b>[개별인증 양식 2번]</b> 표준 수집·이용 동의서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호출전
[개 <b>별인증 양식 3번]</b> 표준 제공 동의서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제공자 호출전
	Ţ	
<b>[개별인증 양식 1번]</b> 표준 전송요구서	정보제공자	전송 요구시

## 3. 양식 및 작성 가이드라인

# [3-1] [통합인증 양식 1번] 표준 전송요구서

가입상품 목록 전송요구서				
정보제공자 (전송 요구를 받는 자)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예시)  • 은행: 계좌(수신/투자상품/대출상품) 목록 및 개인형 IRP 계좌 목록  • 카드: 카드 목록  • 금융투자: 계좌 목록 및 개인형IRP 계좌 목록  • 보험: 보험증권 목록, 대출계좌 목록 및 개인형IRP 계좌 목록  • 전자금융: 선불전자지급수단 목록 및 계정 목록  • 할부금융: 계좌(대출/운용리스) 목록  • 보증보험: 보증보험 증권 목록  • 통신: 통신 계약 목록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상세정보 전송요구를 위한 가입상품목록 조회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상세정보 전송요구시까지 또는 7일 중 짧은 기간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아니오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	상세정보 전송요구시까지 또는 7일 중 짧은 기간			

## 작성 가이드라인 [통합인증 양식 1]

#### ○ 정보제공자(전송 요구를 받는 자)

- 고객이 선택한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보제공자 일괄선택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일괄선택 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선택은 기관코드 기준으로 50개를 초과할 수 없음(한 금융 회사가 여러 개의 기관코드를 보유한 경우 각각의 기관코드별로 하나의 정보제공자로 봄). 여러번에 나누어 일괄선택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괄선택 기능으로 선택 하는 정보제공자는 합하여 50개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고객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자율 구성한 정보제공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가·수정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 이 각 정보제공자를 개별적으로 추가 선택한 경우에는 50개 초과가 가능함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원칙) 고객이 선택한 개인신용정보 항목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이용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선택이 이루어 져야 함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자산목록 Scope의 구분에 따른 문구로 기재 하되 예시보다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가능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상세정보 전송요구를 위한 가입상품목록 조회'로만 기재하여야 함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상세정보 전송요구시까지 또는 7일 중 짧은 기간' 보유.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가입상품목록 조회 용도는 정기전송하지 않음

### ○ 전송요구의 종료 시점(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

- 전송요구의 종료 시점은 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을 의미. 가입상품 목록 조회용 전송 요구서의 경우 상세정보 전송요구시 자동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상세정보 전송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7일내 폐기

### [3-2] [통합인증 양식 2번] 표준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입상품 목록 조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상세정보 전송요구를 위한 가입상품목록 조회 보유 및 이용기간 상세정보 전송요구시까지 또는 7일 중 짧은 기간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권리 및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본인신용정보 불이익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전자서명, 접근토큰, 인증서, 전송요구서 (예시 – 수신계좌 목록) 신용거래정보 • 수신계좌목록 : 고객정보 최초생성일시, 적요 정보 전송요구 여부. 계좌번호.회차번호. 상품명. 외화계좌여부. 마이너스약정 여부. 계좌번호 별 구분 코드. 계좌번호 별 상태 코드 □ 동의하지 않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작성 가이드라인 [통합인증 양식 2]

-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는 수집·이용되지 않으며, 만 19세 미만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전송요구를 하지 않아 전송요구를 통하여 수집되는 정보는 없음을 전제로 작성된 표준동의서 양식임
- ※ 수집·이용 동의 받지 않은 정보가 전송요구에 의하여 전송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함

####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 수집·이용 목적

- '상세정보 전송요구를 위한 가입상품목록 조회'로만 기재하여야 함

## ○ 보유 및 이용기간

- '상세정보 전송요구시까지 또는 7일 중 짧은 기간' 보유.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단, 모바일 환경 등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글씨의 크기가 9포인트 미만인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정보주체가 화면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필수 동의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 거부 권리 표시

### ○ 수집·이용항목(개인(식별)정보)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통합인증방식에 의한 전송요구시에는 전송요구서, 전자서명, 인증서, 접근토큰을 수집・이용하므로 수집・이용 동의 항목에 포함 또한 회원가입시 CI 활용에 대한 수집·이용동의가 별도로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도 반영할 필요.

### ○ 수집·이용 항목(신용거래정보)(「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알고하는 동의의 취지에 따라 예시와 같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자산목록 Scope보다 상세히 기술(예시는 서비스 가이드라인 3.3. 대상 정보 항목 참고한 것임)
- 통합인증 양식 1번 가입상품 목록 전송요구서의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3-3] [통합인증 양식 3번] 표준 제공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본인확인 및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확인 및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목적 달성 시까지		
※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전자서명, CI, 인증서, 전송요	구서	
위 개인(신용)정	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작성 가이드라인 [통합인증 양식 3]

#### 전송요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고객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과정에서 작성되는 동의서와는 별개임

###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 고객이 선택한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단, 모바일 환경 등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글씨의 크기가 9포인트 미만인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정보주체가 화면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 제공 항목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통합인증 방식에 의한 전송요구시에는 전송요구서·CI·전자 서명·인증서를 신용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므로 제공 항목에 포함
  - ※ 본 가이드라인은 최초 서비스 가입시 CI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CI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작성한 것. 해당 동의에 따른 수집ㆍ이용 기간 범위 내가 아니 라면 CI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함

# [3-4] [통합인증 양식 4번] 표준 전송요구서

정보제공자 (전송 요구를 받는 자)  (예시)  • 은행 : 수신계작 정보, 투자 상품 정보, 대출상품 정보, 개인형 IRP정보 • 카드 : 카드 정보, 포인트 정보, 청구·결제 정보 및 리볼빙 정보, 대출상품 정보 • 가용등자 : 계좌 정보, 개인형IRP 정보 • 보험 : 보험 정보, 대출상품 정보 • 보충보험 : 보충 정보, 개인형IRP 정보 • 보충보험 : 보충보험 정보 • 보안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서비스 이용 종료시 또는 삭제요구시 까지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전송요구시의 유료시점 (전송요구시의 유료기간) □ 미 (주1회) □ 아니오 □ 1년 □ 1년 범위 내 직접 선택	상세정보 전송요구서			
● 은행: 수신계좌 정보, 투자 상품 정보, 대출상품 정보, 개인형 IRP정보  ● 카드: 카드 정보, 포인트 정보, 청구·결제 정보 및 리볼빙 정보, 대출상품 정보  ● 급용투자: 계좌 정보, 개인형IRP 정보  ● 보험: 보험 정보, 대출상품 정보, 개인형IRP 정보  ● 보험: 보험 정보, 대출상품 정보, 개인형IRP 정보  ● 한부금융: 대출상품 또는 운용리스 정보  ● 보증보험: 보증보험 정보  ● 함부금융: 대출상품 또는 운용리스 정보  ● 보증보험: 보증보험 정보  ● 환부금융: 대출상품 또는 운용리스 정보  ● 보증보험: 보증보험 정보  ● 함시: 통신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서비스 이용 종료시 또는 삭제요구시 까지  □ 예 (주1회) □ 아니오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1년	"" "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기원 기원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기원 기원 시청보 및 기원형 기원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기원 기원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기원보 이 기원 지원보 이 기원 지원보 이 기원 지원보 이 기원 지원보 이 기원 지원 지원 이 기원 지원 지원 이 기원 지원 지원 이 기원 지원		(예시)		
제공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1년		### ### ### ### ### ### ### ###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1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여 (주1회) □ 아니오  □ 가니오  □ 가니오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역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1년		서비스 이용 종료시 또는 삭제요구시 까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 <del>—</del>		

## 작성 가이드라인 [통합인증 양식 4]

#### 정보제공자(전송 요구를 받는 자)

- 고객이 선택한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원칙) 고객이 선택한 개인신용정보 항목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집 이용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선택이 이루어 져야 함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전송요구 Scope의 구분에 따른 문구로 기재 하되 예시보다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가능
- 고객이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선택하는 화면 구현시 「금융분야 마이 데이터 표준API 규격」에 따라 전송된 정보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객이 해당 상품 또는 계좌의 속성 또는 특성을 충분히 알고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현하여야. 함(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자 자율)

#### ※ 신용정보주체 권리 보호

#### ① 상품구매정보

-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업권/결제정보" 중 "상품구매정보\*"는 고객이 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 구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상품(구매)분류 코드'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상품(구매)분류 코드'
-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정보와 상이한 정보가 전송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객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품구매정보 선택시 별도 고지(정보주체별 1회 이상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구매 정보를 선택할 때마다 매번 별도 고지 할 필요는 없음)

#### ※ 알림 문구 예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품구매정보 항목]에는 실제 구매한 상품이 아닌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13 항목으로 구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전송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가맹점명 정보

- "카드업권/청구, 결제 정보 및 리볼빙 정보"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 업권/결제 정보" 중 "가맹점명 정보\*"는 고객이 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 구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다. 카드정보의 '일별 카드 이용 정보-승인상세정보'의 '가맹점명'
  - 다. 카드정보의 '월별 카드 이용 정보-청구상세정보'의 '가맹점명'
  - 마. 선불전자지금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가맹점명'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가맹점명'
  - 사. 통신업 정보의 '결제정보-소액결제 이용내역'의 '가맹점명
- 가맹점명 정보는 고객이 그 전송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 고객이 가맹점명 정보의 선택시 별도 고지(정보주체별 1회 이상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명정보를 선택할 때마다 매번 별도 고지 할 필요는 없음)

#### ※ 알림 문구 예시

[카드청구 및 결제정보의 가맹점명 항목]에는 본인의 소비생활 등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전송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 "은행업권/수신계좌 정보"의 "적요정보\*",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및"전자금융 업권/결제정보\*"중 "거래메모정보\*\*"는 고객이 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 구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가. 여수신정보의 '계좌정보-거래내역'의 '적요'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거래메모'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거래메모'

•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에는 제3자의 정보(송금인/수취인명)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고객이 그 전송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이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선택시 별도 고지 (정보주체별 1회 이상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를 선택할 때마다 매번 별도 고지 할 필요는 없음)

#### ※ 알림 문구 예시

[계좌정보의 적요 항목]에는 송금인/수취인명 정보 등 본인의 사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전송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고유업무인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으로 기재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시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전에도 고객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삭제하여야 함.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정기전송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전송주기는 주1회로 고정되며, 정보제공자별로 선택함
  - ※ 시행 초기 전산 용량 등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주1회로 고정.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고객의 선택권을 다양화 할 예정

## ○ 전송요구의 종료 시점(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

- 전송요구의 종료 시점은 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을 의미. 전송요구서와 대응되는 접근 토큰의 유효기간이 최장 1년이므로 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은 기본 값은 1년으로 하되 고객이 1년 범위 내에서 직접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날짜를 선택하게 하거나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등 선택권 부여

### [3-5] [통합인증 양식 5번] 표준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세정보 전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시 또는 삭제요구시 까지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권리 및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본인신용정보 통합 불이익 조회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전자서명, 접근토큰, 인증서, 전송요구서

(예시 - 수신계좌)

• 수신계좌 : 계좌기본정보(저축방법, 계좌개설일자, 만기일, 통화 신용거래정보 코드, 약정액, 월 납입액), 계좌잔액정보(통화코드, 현재잔액, 출금 가능액, 적용금리, 최종납입회차), 거래내역(거래일시 또는 거래일자, 거래번호, 거래유형 (코드), 거래구분, 통화코드,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납입회차)

ľ	위 <u>개인(신용)정보</u>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상품구매 카테고리 정보	가전 및 전자/도서 및 문구/패션 및 으 및 유아/식품/생활 및 가구/여행 및 레저/음식/E쿠폰 및 기타서비스 카타	교통/문화 및
ľ	위 <u>상품구매정보</u>	<u>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가맹점명 정보	가맹점명 정보	
ľ	위 <u>가맹점명 정보</u>	<u>.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ı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위 <u>적요 또는 거</u> 리	<mark>배메모정보</mark>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통합인증 양식 4에 따른 전송요구시 고객에게 위 별도동의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고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동의서의 대응되는 항목에 대한 동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작성 가이드라인 「통합인증 양식 5〕

-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는 수집·이용되지 않으며, 만 19세 미만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전송요구를 하지 않아 전송요구를 통하여 수집되는 정보는 없음을 전제로 작성된 표준동의서 양식임
- ※ 수집ㆍ이용 동의 받지 않은 정보가 전송요구에 의하여 전송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으로만 기재하여야 함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시 또는 삭제요구시 까지 보유.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단. 모바일 환경 등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글씨의 크기가 9포인트 미만인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정보주체가 화면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필수 동의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 거부 권리 표시

#### ○ 수집·이용항목(개인(식별)정보)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통합인증방식에 의한 전송요구시에는 전송요구서, 전자서명, 인증서, 접근토큰을 수집·이용하므로 수집·이용 동의 항목에 포함

### ○ 수집·이용 항목(신용거래정보)(「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알고하는 동의의 취지에 따라 예시와 같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전송요구 Scope보다 상세히 기술(예시는 서비스 가이드라인 3.3. 대상 정보 항목 참고한 것임
- 통합인증 양식 4번 상세정보 전송요구서의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 신용정보주체 권리 보호(통합인증 양식 4에 따른 전송요구시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전송요구 하도록 선택한 경우 아래 대응되는 항목도 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① 상품구매정보 별도 동의

-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업권/결제정보" 중 "상품구매정보\*"는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정보와 상이한 정보가 전송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별도 동의(「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상품(구매)분류 코드'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상품(구매)분류 코드'

#### ② 가맹점명 정보 별도 동의

- "카드업권/청구, 결제 정보 및 리볼빙 정보"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 업권/결제 정보" 중 "가맹점명 정보\*"는 고객이 그 전송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 별도 동의(「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 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다. 카드정보의 '일별 카드 이용 정보-승인상세정보'의 '가맹점명'
- 다. 카드정보의 '월별 카드 이용 정보-청구상세정보'의 '가맹점명'
- 마. 선불전자지금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가맹점명'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가맹점명'
- 사. 통신업 정보의 '결제정보-소액결제 이용내역'의 '가맹점명'

#### ③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별도 동의

- "은행업권/수신계좌 정보"의 "적요정보\*",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 업권/결제정보\*"중 "거래메모정보\*\*"는 제3자의 정보(송금인/수취인명)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고객이 그 전송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 동의(「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가. 여수신정보의 '계좌정보-거래내역'의 '적요'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거래메모'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거래메모'

# [3-6] [개별인증 양식 1번] 표준 전송요구서

	전송요구서
정보제공자 (전송 요구를 받는 자)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예시)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ul> <li>◆ 은행: 수신계좌 정보, 투자 상품 정보, 대출상품 정보, 개인형 IRP정보</li> <li>◆ 카드: 카드 정보, 포인트 정보, 청구・결제 정보 및 리볼빙 정보, 대출상품 정보</li> <li>◆ 금융투자: 계좌 정보, 개인형IRP 정보</li> <li>◆ 보험: 보험 정보, 대출상품 정보, 개인형IRP 정보</li> <li>◆ 전자금융: 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결제 정보</li> <li>◆ 할부금융: 대출상품 또는 운용리스 정보</li> <li>◆ 보증보험: 보증보험 정보</li> <li>◆ 통신: 통신정보</li> </ul>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시 또는 삭제 요구시까지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예 (주1회) □ 아니오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	□ 1년 □ 1년 범위 내 직접 선택

## 작성 가이드라인 [개별인증 양식 1]

#### 정보제공자(전송 요구를 받는 자)

- 고객이 선택한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원칙) 고객이 선택한 개인신용정보 항목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집 이용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선택이 이루어 져야 함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전송요구 Scope의 구분에 따른 문구로 기재 하되 예시보다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가능
- 고객이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선택하는 화면 구현시 「금융분야 마이 데이터 표준API 규격」에 따라 전송된 정보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객이 해당 상품 또는 계좌의 속성 또는 특성을 충분히 알고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현하여야. 함(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자 자율)

#### ※ 신용정보주체 권리 보호

#### ① 상품구매정보

-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업권/결제정보" 중 "상품구매정보\*"는 고객이 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 구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상품(구매)분류 코드'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상품(구매)분류 코드'
-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정보와 상이한 정보가 전송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객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품구매정보 선택시 별도 고지(정보주체별 1회 이상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구매. 정보를 선택할 때마다 매번 별도 고지 할 필요는 없음)

#### ※ 알림 문구 예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품구매정보 항목]에는 실제 구매한 상품이 아닌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13 항목으로 구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전송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가맹점명 정보

- "카드업권/청구, 결제 정보 및 리볼빙 정보"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 업권/결제 정보" 중 "가맹점명 정보\*"는 고객이 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 구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다. 카드정보의 '일별 카드 이용 정보-승인상세정보'의 '가맹점명'
  - 다. 카드정보의 '월별 카드 이용 정보-청구상세정보'의 '가맹점명'
  - 마. 선불전자지금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가맹점명'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가맹점명'
  - 사. 통신업 정보의 '결제정보-소액결제 이용내역'의 '가맹점명
- 가맹점명 정보는 고객이 그 전송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 고객이 가맹점명 정보의 선택시 별도 고지(정보주체별 1회 이상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명정보를 선택할 때마다 매번 별도 고지 할 필요는 없음)

#### ※ 알림 문구 예시

[카드청구 및 결제정보의 가맹점명 항목]에는 본인의 소비생활 등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전송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 "은행업권/수신계좌 정보"의 "적요정보\*",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및"전자금융 업권/결제정보\*"중 "거래메모정보\*\*"는 고객이 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 구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가. 여수신정보의 '계좌정보-거래내역'의 '적요'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거래메모'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거래메모'

•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에는 제3자의 정보(송금인/수취인명)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고객이 그 전송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이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선택시 별도 고지 (정보주체별 1회 이상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를 선택할 때마다 매번 별도 고지 할 필요는 없음)

#### ※ 알림 문구 예시

[계좌정보의 적요 항목]에는 송금인/수취인명 정보 등 본인의 사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전송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고유업무인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으로 기재

###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시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전에도 고객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삭제하여야 함.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상의 보존기가을 따름

## ○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정기전송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전송주기는 주1회로 고정되며, 정보제공자별로 선택함
  - ※ 시행 초기 전산 용량 등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주1회로 고정,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고객의 선택권을 다양화 할 예정

### ○ 전송요구의 종료 시점(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

- 전송요구의 종료 시점은 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을 의미. 전송요구서와 대응되는 접근 토큰의 유효기간이 최장 1년이므로 전송요구서의 유효기간은 기본 값은 1년으로 하되 고객이 1년 범위 내에서 직접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날짜를 선택하게 하거나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등 선택권 부여

## [3-7] [개별인증 양식 2번] 표준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시 또는 삭제요구시 까지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접근토큰
※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	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
	(예시 – 수신계좌)
신용거래정보	• 수신계좌: 계좌기본정보(저축방법, 계좌개설일자, 만기일, 통화코드, 약정액, 월 납입액), 계좌잔액정보(통화코드, 현재 잔액, 출금 가능액, 적용금리, 최종납입회차), 거래내역(거래 일시 또는 거래일자, 거래번호, 거래유형 (코드), 거래구분, 통화코드,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납입회차)
	□ 동의하지 않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정보주체가 상품구매 카테고리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				
상품구매 카테고리 정보	가전 및 전자/도서 및 문구/패션 및 의류/스포츠/화장품/아동 및 유아/식품/생활 및 가구/여행 및 교통/문화 및 레저/음식/E쿠폰 및 기타서비스/기타 카테고리 정보			
위 <u>상품구매정보                                    </u>	<u> </u>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정보주체가 가맹점명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			
가맹점명 정보	가맹점명 정보			
위 <u>가맹점명 정보                                   </u>	위 <u>가맹점명 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 정보주체가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정보				
위 <u>적요 또는 거래</u>	□ 동의하지 않음 <u>                                      </u>			

## 작성 가이드라인 [개별인증 양식 2]

-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는 수집・이용되지 않으며, 만 19세 미만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전송요구를 하지 않아 전송요구를 통하여 수집되는 정보는 없음을 전제로 작성된 표준동의서 양식임
- ※ 수집·이용 동의 받지 않은 정보가 전송요구에 의하여 전송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전송요구를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으로만 기재하여야 함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시 또는 삭제요구시 까지 보유.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단, 모바일 환경 등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글씨의 크기가 9포인트 미만인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정보주체가 화면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필수 동의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 거부 권리 표시

#### ○ 수집·이용항목(개인(식별)정보)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개별인증방식에 의한 전송요구시에는 접근토큰을 수집·이용 하므로 수집·이용 동의 항목에 포함

### ○ 수집·이용 항목(신용거래정보)(「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알고하는 동의의 취지에 따라 예시와 같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전송요구 Scope보다 상세히 기술(예시는 서비스 가이드라인 3.3. 대상 정보 항목 참고한 것임
- 가능하다면 개별인증 양식 1번에 따른 전송요구 항목과 일치 시켜야 함. 다만, 수집·이용 동의와 전송요구 항목을 일치시키는 환경을 구현하기 어려운 개별인증 전송방식특성상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항목 중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하기위해 선택한 개인신용정보 항목에 한함"을 추가 기재하여 수집·이용 동의 항목에 개별인증 양식 1번에 따른 전송요구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재하여야 함. 이경우에도 정보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보만 수집·이용 항목으로 제시하여야 함(예를 들어, 고객이 정보제공자로 카드사를 선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집하는 항목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함)
- ※ 수집·이용 동의 받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 ※ 신용정보주체 권리 보호

#### ① 상품구매정보 별도 동의

-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업권/결제정보" 중 "상품구매정보\*"는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정보와 상이한 정보가 전송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별도 동의(「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 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상품(구매)분류 코드'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상품(구매)분류 코드'

#### ② 가맹점명 정보 별도 동의

- "카드업권/청구, 결제 정보 및 리볼빙 정보"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 업권/결제 정보" 중 "가맹점명 정보\*"는 고객이 그 전송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 별도 동의(「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 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다. 카드정보의 '일별 카드 이용 정보-승인상세정보'의 '가맹점명'
    - 다. 카드정보의 '월별 카드 이용 정보-청구상세정보'의 '가맹점명'
    - 마. 선불전자지금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가맹점명'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가맹점명'
    - 사. 통신업 정보의 '결제정보-소액결제 이용내역'의 '가맹점명'

#### ③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별도 동의

- "은행업권/수신계좌 정보"의 "적요정보", "전자금융업권/선불전자 지급수단 정보" 및 "전자금융 업권/결제정보\*"중 "거래메모정보\*\*"는 제3자의 정보(송금인/수취인명)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고객이 그 전송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 동의(「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참고)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가. 여수신정보의 '계좌정보-거래내역'의 '적요'
  -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3장 3절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정보의 '거래내역-선불거래내역'의 '거래메모'
    - 바. 전자결제정보의 '거래내역-결제내역'의 '거래메모'

## [3-8] [개별인증 양식 3번] 표준 제공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합니다.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제공받는 자의 본인확인 및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확인 및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목적 달성시 까지 ※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본인확인 CI 및 인증정보 □ 동의하지 않음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작성 가이드라인 [개별인증 양식 3]

#### 전송요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별인증 방식 전송요구시 전송요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 에게 CI를 제공하므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과정과는 별개의 동의서임

#### 신용정보 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 고객이 선택한 신용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단. 모바일 환경 등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글씨의 크기가 9포인트 미만인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정보주체가 화면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 제공 항목

-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개별인증방식에 의한 전송요구시 CI를 신용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므로 제공 항목에 포함
  - ※ 본 가이드라인은 최초 서비스 가입시 CI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CI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작성한 것. 해당 동의에 따른 수집 이용 기간 범위 내가 아니라면 CI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함

# 나. Q&A



### 궁금해요?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요구하는 경우 표준 전송요구서를 변경하여 전송 01 요구 할 수 있는지?

표준전송요구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고객 에게 유리한지 여부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함



표준 전송요구서를 변경하는 경우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송요구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마케팅 목적 02 전송요구)

표준전송요구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전송요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정보제공자는 고객이 전송요구한 내역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03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별도의 수집 · 이용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 정보제공자가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수신자에게 제공하는 04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요한지? A 고객의 전송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통합인증 방식의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자별로 전송요구에 따라 수집한 정보는 각각 다를 수 있음. 수집·이용 동의서를 정보제공자 별로 각각 **Q5** 받아야 하는지? A 정보제공자 별로 받을 필요는 없음 전송요구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이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선택 동의를 **Q6** 받아야 하는지 다른 목적으로 전송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전송요구가 아닌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

통합인증 양식 3번 및 개별인증 양식 3번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시 신용정보법 07 제19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하여야 하는지? 제공동의서 항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19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Δ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시 신용정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Q8** 약정을 하여야 하는지? A 신용정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할 필요 없음 정기전송 여부, 종료시점 항목을 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정보제공자가 정한 09 기준에 따라 일괄 설정할 수 있는지? 표준 전송요구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함 Δ 통합인증의 상세정보 전송요구를 완료한 상황에서 전송요구 하고자 하는 상품 **Q10** 또는 계좌를 추가하는 경우 전송요구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가입상품 목록의 조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함

서비스 가이드라인 알고하는 동의 원칙은 동의서에만 적용되는지? 011

서비스 가이드라인 알고하는 동의 원칙은 전송요구서에도 적용됨



Q12 전송요구서를 정보제공자별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주어야 하는지?

정보주체에게 전송요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게 한다면 정보제공자별로 개별 양식으로 보여주거나 문서형태로 제공할 의무는 없음



전송요구서의 정보제공자를 특정한 기관만 표시 하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 013 또는 특정업권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 한지?

고객이 선택한 정보제공자를 특정하여 표기하여야 함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발 행 일** 2021년 7월 29일

**발 행 처** 한국신용정보원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T. 02-3705-5900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T. 02-786-2999

※ 본 가이드라인의 임의 복제·복사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